<u>제1장</u>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데이터 세분화와 항목 표준화 연구

박영실 · 박효민* · 이영미 · 김월화**

제1절 서론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세계를 이끌어갈 발전목표가 제70차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총회('15년 9월)에서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로 불리는 이 목표는 2015년까지 진행되어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계승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목적으로 8개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던 MDGs에서 확장되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평화와 안보 등에 관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었다.

MDGs와 달리 SDGs에서 주목해 볼 점은 가장 뒤떨어져 있는 집단을 아우르기 위해 '어느누구도 뒤처지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 원칙을 실천하고자 대두된 통계 전략이 바로 데이터 세분화(data disaggregation)이다. SDGs는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이행 진척도가 평가되는데, 2016년 3월 UN통계위원회에서는 SDGs를 측정할 수 있는 230개 지표가 위원국 간에 합의되었다.!) 지표는 고도의 정교화된 작업을 요구하는 것으로 향후 방법론 발전수준이나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변함없는 것은 '공식통계의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을 준수하며,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민지위,2)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N, 2016).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1)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수를 모두 합하면 241개이다. 이 중 일부 지표가 2-3개 세부목표에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중복 지표를 제외하면 230개가 된다.

데이터 세분화는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invisible) 집단을 가시화(visible) 함으로써 빈곤층, 여성, 아동 및 노인, 난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고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MDGs에서 내세웠던 목표의 대부분이 일차적으로 국가 평균을 생산해냄으로써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그 차이를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UN, 2015). 데이터 세분화는 연구자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policy makers) 및 실무자(practitioners)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책 방향이 '고객맞춤형'으로 변화되면서 미혼모, 귀농귀촌인, 시간제근로자, 독거노인 등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한 정책 수립 요구에 따라 해당 집단에 대한 통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데이터 세분화는 조사방법론 및 통계학적 관점에서 여러가지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취약집단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표본규모의 확대가, 취약집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방법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지침에 제시된 세분화를 위해서 조사항목의 추가나 혹은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지역 단위의 통계치 생산을 위해서는 자료분석과정에서 행정자료 등의 보조정보를 활용한 간접 추정기법을 적용하거나, 하위 인구집단 세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노출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방법론 혹은 통계적 이슈를 점검해 보고 대응전략을 수립해보고자 한다. 그 중 첫 번째 단계로 항목 표준화를 다루어 보고자한다. SDGs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에서 표준화된 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항목 표준화이다. UN통계위원회에서도 지표 프레임워크를 관통하는 데이터 세분화를 위해 범주 표준화(harmonization of the categories) 작업을 하고, 모든 지표는 표준화된 범주를 기반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UNSC, 2017).3)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SDGs 데이터 세분화를 소개하고, 3절에서는 세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과정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4절에서는 데이터 세분화에서 항목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국내 승인통계에서 핵심항목들의 항목 표준화현황을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²⁾ 영어로 migration은 "태어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물리적 이동(UN 2014)"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및 국외 이동을 모두 의미한다. migration이 이민, 이주 등 여러 용어로 번역되고 있으나 SDGs에서 의미하는 바가 국내 혹은 국외 어느 분야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국내 승인통계 항목의 표준화 수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국가 간 이동에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민으로 번역하였다.

³⁾ 일반적으로 표준화는 standardization을 번역한 것이다. 최근 조사방법론 영역에서는 harmonization이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두 용어의 개념상 차이는 뒤에서 다루고 있으나, harmonization에 적합한 번역어를 찾지 못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2절 SDGs 데이터 세분화

SDGs 채택 문서인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서문에서는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 자는 협력을 통해 동 계획을 이행하되, 인류의 빈곤 탈피 및 지구의 치유와 보호를 추구하고, 세계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길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대담하고 변혁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데이터 세분화는 이러한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세부목표와 지표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부목표 17.18은 '고품질의 시의적절하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주요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 세부목표를 측정할 지표는 '국가적 수준에서 완전히 세분화된 형태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세부목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세분화 변수인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민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지표를 세분화함으로써 하위인구집단별로도 SDGs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하는데, 각 변수의 개념, 분류체계(classification)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표 1-1〉데이터 세분화를 언급하고 있는 세부목표와 지표

구분	내용
세부 목표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적절하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주상태, 장애,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By 2020, enhance capacity-building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availability of high-quality, timely and reliable data disaggregated by income, gender, age, race, ethnicity, migratory status, disability,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
지표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완전히 세분화된 형태로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비율 (Propor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produced at the national level with full disaggregation when relevant to the target,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출처: UNSC(2016)

230개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지표를 성 및 연령 등 주요 인구집단으로 세분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표 1.1.1의 경우 국제 빈곤선 이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비율을 성·연령·고용상태·지리적 위치별로, 지표 1.3.1은 사회적 보호를받는 인구비율을 성·특수이동·실업자·노령자·장애인·임산부/신생아·산업재해피해자·빈민, 그리고 취약계층별로 나누어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1-2>는 230개 지표의 세분화 현황이다. 성과 연령에 대한 세분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장애, 지역, 이민지위 순이었다. 기타 특성으로는 고용상태, 산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230개 지표에 대한 세분화 변수 유형

구분	소득	성	연령	인종	민족	이민	장애	지역	기타	합계
목표1	2	6	4				1	1	5	19
목표2		1							3	4
목표3		1	2						1	4
목표4	1	6	4				1	1	5	18
목표5		3	4						4	11
목표6										
목표7										
목표8		7	3			2	2		1	15
목표9									2	2
목표10		1	1				1			3
목표11		3	3				3	1	5	15
목표12									1	1
목표13										
목표14										
목표15										
목표16		7	7				2		4	20
목표17									4	4
합계	3	35	28			2	10	3	35	116

위의 표는 각 지표에서 세분화 변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만을 센(count) 것이나, 지표 자체에는 세분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는 세분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표 자체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그렇다. 예컨대, 지표 8.6.1은 교육·취업 혹은 훈련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양성평등을 다루고 있는 목표5의 경우 지표의 상당수가 이미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표 5.3.1은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여성 비율을, 지표 5.5.1은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을, 5.5.2는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을 요구한다.

세분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슈는 현 지표에는 세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세분화가 필요한 지표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표 16.1.2는 범죄피해 두려움을 측정 하는 것인데, 범죄피해 두려움이 성·연령 등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잘 검증되어 있다. 범죄발생 피해 가능성이 낮은 여성이나 노년층에서 범죄 두려움이 높다는 범죄피해 두려움 패러독스(victimization-fear paradox)에도 불구하고 현 지표에는 세분화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Lindquist and Duke, 1982 등).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세분화가 가능한 변수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세분화되어야 할 집단변수로 고용상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지표에서는 고용상태별로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예: 지표 1.1.1, 1.3.1 등). SDGs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종교, 소수자, 난민, 노숙자, 수용자, 슬럼거주자, 거리청소년 등이 논의되고 있다(Fasel, 2016).4)

지금까지 세분화 변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세분화 수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세분화 수준은 <표 1-3>과 마찬가지로 1차원 세분화와 다차원 세분화 (multi-dimensional disaggregation)로 구분할 수 있다(UNESCAP, 2016). 그러나, 현 지표 프레임워크에서는 1차원 세분화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표 11.2.1은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을 연령·성·장애형태별로 병렬적으로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남성 및 여성 내에서 장애형태가 추가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집단을 한 차원 더 세분화시킴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정책대상의설정이 가능하다(Hancioglu, 2016). 그러나 이러한 2차원 혹은 3차원과 같은 다차원 세분화는 단순히 수집된 데이터를 집단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분석 수준에서 신뢰성있는 통계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 전 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1-3〉데이터 세분화 수준

1차원 세분화	다차원 세분화
성 지역	여성 남성
	시골 도시 시골 도시

출처: UNESCAP(2016)

⁴⁾ 이와 함께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취약집단의 개념이 '인간'에게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이야할 것이다. 목표6(물과 위생), 13(기후변화 대응),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의 경우 세분화 변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표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이나, 지표 15.4.2 산 녹색 보호지수 등은 지리적 위치로 세분화할 수 있다.

Hancioglu(2016)는 왜곡된 추정을 피하기 위해 데이터 세분화에서 필요한 방법론적업무를 지식 발전정도에 따라 새로운(혹은 어려운) 세분화와 오래된 세분화로 구분하고있다. 오래된 세분화의 대표적인 예는 성이나 연령이다. 이 두 가지 변수는 모든 사회과학분석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표준화 수준이 높아, 세분화를 통한 하위인구집단에 대한국가 간 비교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종, 민족, 이민지위, 장애는세분화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victoria, 2016). 새롭고 혹은 어려운 세분화의 경우 표준 (standards), 측정도구(measurement tools), 프로토콜(protocols) 개발이 시급하다.

제3절 데이터 세분화와 조사 과정 이슈

데이터 세분화의 궁극적 목적은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보통 뒤처지는 그룹은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집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혹은 자료분석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조사방법론 영역에서 조사가 어려운 집단이라고 하여 H2S(hard to survey)라고 불린다.5) 사실, 응답률이 낮은 집단은 모두 H2S로보일 수도 있으나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Tourangeau(2014)는 H2S 집단을 <표 1-4>와 같이 5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①명확한 프레임이 없어 표본추출이 어려운 경우(hard to sample), ②식별이 어려운 경우(hard to identify)로 특성이 숨겨졌거나(hidden)혹은 낙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③유동성(mobile)으로 접촉이 어려운 경우(hard to find or contact), ④조사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설득이 어려운 경우(hard to persuade), ⑤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면접이 어려운 경우(hard to interview)이다. 이것은 각각 ①표본추출과 커버리지(sampling/coverage), ②식별화(identification), ③위치식별 및 접촉(location/contact), ④설득(persuasion), ⑤면접(interviewing)으로 일대일 대응될 수 있다.6) 스웨덴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공식통계저널(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의 H2S 특별호(2014년 2호) 문헌리뷰 결과를 보면 표본선택(①+②)과 조사참여(③+④)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면접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영역은 표집오차 및 커버리지 오차, 무응답오차, 응답오차 등과도 연결된다.

⁵⁾ Willis et al.(2014)은 H2S보다는 H2R(Hard to reach)이라는 개념을 선호한다. H2S에는 해당 집단의 특성보다는 조사자의 노력이 덜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베트남이 아닌 지역에서 베트남인을 면접한다고 할 때 베트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사원이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것이지 해당 집단의 특성이 조사가 어렵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조사원을 모집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해당 집단의 '희박'이라는 면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H2S를 사용하고자 한다.

⁶⁾ Willis et al.(2014)는 이 영역을 좀 더 단순화 시켜서 표본선택(selection)(①+②), 조사참여(recruitment)(③+④), 면접 (interviewing)(⑤)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1-4〉 H2S 유형구분

	1	2	3	4	5
H2S	hard to sample	hard to identify	hard to find	hard to persuade	hard to interview
Tourangeau (2014)	sampling/ coverage	identification	location/ contact	persuasion	interviewing
오차	sampling/co	verage error	nonrespo	nse error	response error

데이터 세분화 이슈는 자료수집 이후의 자료분석 및 자료배포 과정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하위인구집단의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지역 추정기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자료배포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및 비밀보호 이슈가 쟁점화될 수 있으므로 노출 제어기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표 1-5>는 조사의 전 생애주기(survey life cycle)에서 데이터 세분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5〉 조사과정별 데이터 세분화 저해 이슈 및 대안

구분	주요업무	세분화 저해 요소	조사방법론/통계적 대안
조사설계	· 개념정의 · 조사표설계 · 표본설계	· 비일관적 용어, 개념 · 취약집단 배제	· 국제표준메타데이터 · 대안적 표본추출
자료수집	· 조사원 · 현장조사	· 취약집단 면접 한계	· 취약집단 면접 프로토콜
자료처리	· 자료입력 · 내용검토 · 무응답처리	· 단위 및 항목 무응답 발생	· 무응답 대체방법
자료분석	· 결과집계 · 보정및분석	· 하위집단 추정 한계	· 소지역 추정방법
자료공표	· 결과공표 · 자료제공	· 개인정보 노출	· 노출제어기법

l. 조사설계

조사설계 단계에서는 대상 모집단(target population)의 정의, 표본추출, 조사표 설계 등과 관련된 조사업무가 결정되어야 한다. 대상 모집단은 실제 조사가 적용되는 집단을 일컫 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특정 집단이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 배제되는 집단이 데이터 세분화 과정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취약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명확한 개념정의가 어려운 취약집단이 있다. '어린이', '노년층', '여성' 등 성 및 연령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은 비교적 개념이 명확한 편이나, 장애나 이민지위 등이 결부된 대상 모집단은 정의 과정에서 그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는 방법론적 한계로도 연결된다. 모집단 프레임의 유무, 조사대상자 접촉 및 면접 가능성과 타협된 결과물이 도출되기 쉽다. 개념정의 과정에서의 배제는 이후 모든 조사과정에서 해당 집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조사설계 단계에서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상 모집단에 대한 정의는 가급적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표준화된 정의를 따르며,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등의 단계에서 해당 집단을 '포함'시키기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취해야 할 것이다.

최종 세분화 집단에서 신뢰할 만한 통계치를 얻기 위해 표본추출 과정에서 마련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흔히, H2S를 두고 '건초더미에서 바늘찾기(needle-in-a- haystack phenomenon)'라고 하는데, 일반 모집단에서 숨겨진 개인단위를 찾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Willis et al., 2014). 따라서 이들을 찾기 위한 대안적인 표본추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2단계 표본추출방법(two-stage sampling), 시간-위치 표본추출 방법(time-location sampling), 응답자 파생 표본추출방법(respondent driven sampling), 포획-재포획(capture-recapture) 방법 등이 그 예이다(Marpsat and Razafindrastsima, 2010).

2단계 표본추출 방법은 스크리닝 조사를 통해서 표본을 선택한 후(1단계), 해당 표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2단계).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며 모집단이 안정적이고 쉽게 식별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안적인 방법으로 해당 집단이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사후에 추정치를 구축하는 간접표본추출방법이 있다. 시간-위치 표본추출방법, 응답자 파생 표본추출방법 등이 그 예이다. 시간-위치 표본 추출방법은 조사대상자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표본추출방법이며, 응답자 파생 표본추출방법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처럼 소수의 편의적 표본으로 시작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점차 확장해나가는 방법이다. 전자는 2001년 프랑스 노숙자 조사에서, 후자는 1997 AIDS 예방 프로그램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

이 두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포획-재포획 방법은 야생동물의수를 추정하는 데에서 기인한 방법이다. 관찰기간 동안 모집단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전제하에 최소 두 번의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관찰된 수와 두 번째 조사에서 관찰된수, 그리고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수를 이용하여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센서스 사후조사에서 커버리지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 관련해서 제기될 수 있는 데이터 세분화 이슈는 취약집단을 조사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역으로 자료수집과정에서 배제되는 원인을 찾아봄으로써 대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자료수집이 어려운 이유는 조사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 (hard to locate/hard to find)와 조사대상자는 찾았으나 면접이 어려운 경우(hard to interview)로 구분해 볼 수 있다. Tourangeau(2014)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응답자가 특정한 거주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유목 문화집단, 노숙자, 난민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시간-지역 표본추출 혹은 응답자 파생 표본추출 등의 간접 표본추출방법이 응답자 접촉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찾았으나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관련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예: 수용자), 표준적인 조사 진행절차에 따라 면접을 하기 힘들 정도의 손상이 있는 경우, 언어 차이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읽거나 말하기 힘든 경우 등이다. 대부분의 조사가 양호한 건강상태와 표준범위 내의 지적능력을 보유하며 감각손상이 없는 경우를 가정하므로 이런 경우에 벗어날 경우 면접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Tourangeua, 2014).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중 언어를 활용한 번역의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전화면접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3. 자료분석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 취약집단을 조사과정에 포함시켰을지라도 발생빈도의 '희박'으로 인해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해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국가 전체 구성원이 조사 모집단인 경우, 모집단 전체 통계 또는 광역단위의 통계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분화된 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기 어렵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도 단위의 통계치 생산을 목적으로 표본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의 통계를 생산해 낼 경우 추정치의 분산이 커져 모수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아진다. 각 시군구별로 배정된 조사구의 분포가 불균형적일 뿐 아니라 어떤 시군구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조사구가

배정되어 조사되기 때문이다(권세혁, 2009). 동일한 맥락에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체계 하에서는 SDGs 지표 8.5.2에서 요구하고 있는 장애별 실업률을 산출해낼 수 없다.

표본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현재와 비슷한 규모의 조사에서 신뢰수준을 갖춘 하위집단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보조정보로 활용한 소지역 추정방법(small area estimation)이 있다. 소지역을 전국이나 광역시도에 대칭되는 지리적으로 작은 국가 행정 구역인 시군구로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나, 지리적으로 작은 지역 뿐 아니라 소영역(small domain) 즉 특정 연령이나 성별, 인종의 그룹과 같은 작은 하위집단을 나타낼 수도 있다 (권순필, 2007).

소지역 추정방법의 종류로는 설계기반 추정법(design-based estimation), 간접 추정법 (indirect estimation), 모형기반 추정법(model based estimation) 등이 있다. 소지역 통계 작성 시설계기반 추정량이 목표 요구 정도를 만족한다면 우선적으로 설계 기반 추정법을 이용하게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량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추정방법 즉 간접 추정법이나 모형기반 추정법을 적용하고 있다(권세혁, 2009).

4. 자료처리: 무응답대체

조사설계와 자료수집단계에서 취약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앞서 언급한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응답을 유발하게 된다. 무응답은 크게 자료 수집과정에서 항목 전체가 응답되지 않는 단위 무응답과 일부 항목이 응답되지 않은 항목 무응답으로 나뉠 수 있으며, 단위 무응답의 경우 재조사나 무응답 가중치 조정을 통하여 처리하고 항목 무응답의 경우 주로 대체(imputation)를 통하여 처리한다. 응답군의특성과 무응답군의 특성이 같다면 문제가 없으나 무응답으로 인해 편향 추정의 우려가 있으며,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만을 조사 결과로 이용할 경우 표본 수의 감소로 인해추정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의규, 2014). 더욱이 취약집단이 무응답군에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응답군의 응답 특성 경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무응답 대체방법을 통해 편향을 보정하고 추정의 효율을 높여야한다.

무응답 대체방법은 결정론적 대체법과 확률적 대체법으로 나뉘는데 결정론적 대체는 주어진 응답자의 자료에 대해 하나의 대체값으로 결정되는 반면, 확률적 대체는 랜덤성을 부여하여 대체될 때마다 다른 값으로 대체된다. 이 중 주로 이용되는 대체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을 몇 개의 대체 층으로 분류한 뒤 각 층에서의 응답자 평균값을 그층에 속한 모든 결측값에 대체하는 방법인 평균대체(mean imputation), 동일 조사에서

유사한 응답자의 값으로 대체하는 핫덱대체(hot deck imputation), 응답자료를 토대로 회귀직선을 추정하고, 회귀모형의 예측값을 이용해 결측된 값을 대체하는 회귀대체 (regression imputation) 등이 있다. 평균대체방법은 간단하여 이용되기 쉬운 장점이 있으며, 항목 변수가 양적 변수이고 구하고자 하는 통계량이 평균일 때 유용하다. 그러나 대체후 값들은 평균값의 빈도수가 지나치게 많아져 응답값들의 분포가 왜곡되고, 평균이 아닌 통계량, 예를 들면 백분위수 같은 통계량을 구할 때는 효율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축차핫덱대체(sequential hot deck imputation)는 대체균 내의 응답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결측값이 있는 경우 결측값 바로 이전의 응답을 결측값 대신 대체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회 및 인구 조사에서 많이 사용된다. 즉, 표본이 사회 및 인구통계 지표에 의해 자연스럽게 대체군으로 구분되며, 대체균 내의 항목값은 서로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많은 대체방법들이 있으며, 그 방법에 따라 대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의성격 및 무응답 특성을 고려하여 취사 선택하고 무응답으로 인한 조사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김규성, 2000).

5. 자료배포: 노출제어기법

수집된 통계자료는 처리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통계정보로 제공되는데, 그 과정에서 응답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disclosure)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정동명, 2006). 따라서 통계자료 배포 과정에서 개인 식별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한 노출제어가 요구된다. 그러나 노출제어는 정보 손실을 초래한다. 예컨대 조사된 상태 그대로의정보를 모두 담아 마이크로데이터를 배포하면 개별 자료의 노출위험이 너무 커지고, 노출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표 범위를 줄이거나 자료를 변형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에 비하여 정보손실이 커지게 된다. 또한, 정보손실과 노출위험 모두 최소화하며 자료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자료 이용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절차를 만들게 되므로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이떨어지게 된다(박민정, 2015). 따라서 상반된 두 요인, 즉 외부의 자료 제공 요구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라는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자료를 제공할 수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노출제어 방법은 자료의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는 크게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와 매크로데이터(macrodata) 두 가지로 나뉜다. 7) 먼저, 마이크로

⁷⁾ 마이크로데이터는 원자료(raw data)에 입력오류나 조사오류 등을 수정한 자료로 통계표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의미하며 매크로데이터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임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를 지칭한다. 매크로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집계표데이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집계의 정도에 따라 세분된 자료부터 통합된 자료까지 다양하게 제공된다(김경미, 2007).

데이터에서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방법은 자료의 형태가 이산형인 경우와 연속형인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이산형 자료인 경우에는 데이터 교환(data swapping), 코딩접근(coding approach), 범주화(grouping) 등의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연속형 자료인 경우에는 반올림(rounding), 간격 범주화(grouping into intervals), 마이크로 통합(micro aggregaion)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정동명, 2006).

매크로데이터 역시 데이터 형태가 빈도(count)인지, 크기(magnitude)인지에 따라서 노출 제어 방법에 차이가 있다. 사업체수와 같이 개수 자체에 의미가 있는 빈도 자료는 작은 값을 민감한 셀로 정의하여 비밀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올림(rounding), 셀감추기 (cell suppression), 자료변조(data perturbation) 또는 분류구조변경(data collapsing) 등과 같은 방법이 주로 적용된다. 반면에 매출액, 종사자수 등과 같이 규모에 의미가 있는 크기 자료는 셀 값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이 큰 값을 갖고 있는 개별정보의 제공 여부에 따라 민감한 셀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로 셀감추기 방법이 적용된다(정동욱·김경미, 2008).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세분화 이슈를 다루어 보았다. '취약집단'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주는 데이터 세분화는 자료배포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위집단별 통계치를 제공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는 아니다. 데이터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조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에대해 명확하게 개념정의하고 이를 조사표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집단이추출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추출기법을 적용하고, 선택된 표본에 접촉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사실 세분화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상당수가 조사가 어려운경우가 많다. 이에 해당집단 표본에 접촉하고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기법을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료수집이 완료된 이후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배포 단계에서도세분화를 요구하는집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적인 처리가필요할 수도 있다. 특정성향을 가진집단의 무응답이 그렇지 않은집단에 비해 높을 가능성에 따라 무응답대체방법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동일한 표본조사를 통해 세분화된집단의 신뢰성있는통계치를 얻기위해서소지역 추정등 간접 추정법 등이 적용될 수도있다. 세분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제어 방법에 대해서도고민해야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데이터 세분화를 위한 조사과정 이슈 중 조사설계 단계의 개념정의 및 조사표 설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SDGs에서 데이터 세분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세분화를 실천하기 위한 분류체계 등은 아직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이나 연령 등 상대적으로 명확히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료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남아 있다. 이에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세분화 관련 항목의

개념, 측정방법(질문 및 응답범주), 결과표 제공형태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4절 항목 표준화 개념 및 사례 검토

1. 주요 개념

데이터 세분화를 위해서는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변수의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살률을 세분화한다고 하면, 연령 및 소득구간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령 및 소득구간 등에 대해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다. 모든 항목은 각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측정되기 때문이다.

조사에서의 지리적 · 문화적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면서, 3M(Multi-national, Multi-regional, Multi-cultural)으로 일컬어지는 범문화(cross-cultural) 조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표준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구화 시대에 단일국가, 단일지역, 단일문화에서만 유용한 조사는 매우 드물다. 공통 조사표를 이용하여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조사(World Value Survey, ESS (European Social Survey),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등)가 진행되는 경우 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통계전략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도 그 결과가 국제적으로 비교되곤 한다. 대표적으로 국가통계의 기본이 되는 센서스는 전 세계 대부분에서 수행되는데, UN은 인구·가구·주택분야 핵심 항목을 선정하여, 해당 항목을 반드시 질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통계기관에서 작성되는 통계의 상당수, 예를 들면 노동력조사, 생활시간조사 등도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문화 조사에서의 핵심은 비교가능성이며 이에 따라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data harmonization)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Granda and Blasczyk, 2016).8)

조사방법론 영역에서 표준화는 입력(input) 표준화와 결과물(output) 표준화 두 가지 접근법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전자는 모든 국가 혹은 하위지역 내 조사에서 표준화된

⁸⁾ 유사한 용어로 standardization이 있다. standardization과 harmonization, 두 용어의 차이는 비즈니스 연구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Fuerters(2008)에 따르면, 전자는 모든 변이를 제거하는 것을, 후자는 변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해보자면, 전자는 다양한 지역 혹은 부서 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엄격하게 일원화(uniform)시키는 것을, 후자는 표준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에서의 차이를 제거하여 프로세스 표준 사이의 변이 정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Richen and Steinhorst, 2005).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standardization에 비해 harmonization에 좀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측정방법 및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미래지향적(prospective) 방향으로 개념·지표·분류체계·훈련 및 기술적인 요구조건의 표준화를 통해 이뤄진다. 반면에 결과물 표준화는 국가 혹은 지역에서 측정된 수치를 통일된 측정방식으로 조정하는(mapped) 것을 일컫는다(Granda and Blasczyk, 2016).

범문화조사에서 어떤 형태의 전략을 선택할 지는 각국의 통계시스템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는데, 만일 조사과정이 중앙에서 통제된다면 입력 표준화를, 조사과정이 주로 개별 국가나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면 결과물 표준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Granda와 Blasczyk(2016)는 입력 표준화나 결과물 표준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융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생산기관은 입력 표준화 계획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후에 결과물 표준화를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범문화조사를 통한 국가 간 비교 뿐 아니라 국가 내 다양한 조사의 비교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 개인·가구 혹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가실시 중인데, 모든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묻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간 차이로 인해사회전반적인 현황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개념·측정방법·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모든조사에서 해당 항목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정도를 측정 · 평가하는 SDGs의 채택은 '항목 표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에서 생산되는 SDGs 지표가 글로벌 수준에서 통합 · 분석 · 비교되기 위해서는 개념, 측정방법, 제공된 결과표 등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주요 국가의 사례 검토

가. 영국

항목 표준화 작업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9) 영국은 정부 내 조사의 비교가능성 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 표준화 작업반(Harmonisation Working Group)을 구축하였다. 2003년에는 사회통계표준화반(Social Statistics Harmonization Group), 2004년에는 범정부그룹인 국가통계표준화반(National Statistics Harmonization Group)을 결성하여 공통적인 통계 프레임, 정의, 분류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동시에 영국 내 개별

⁹⁾ 해외사례는 "조사품질 개선을 위한 질문관리 및 표준화 방안"(박영실·양경진, 2015)을 요약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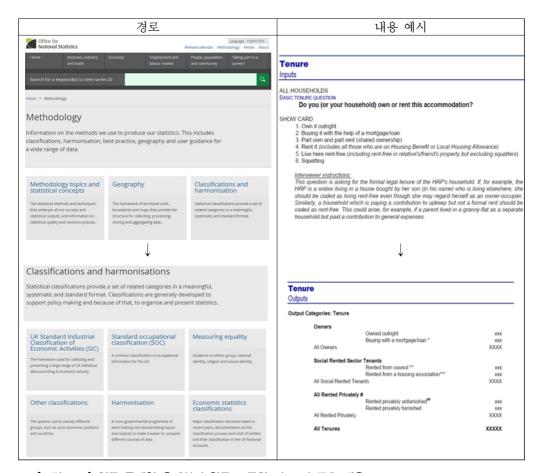
국가들의 차별적 요구, 서로 다른 자료수집방법 및 통계시스템의 데이터 요구 등에 대응하고 있다(ONS, 2016).

2003년에 구성된 표준화반은 조사 주제 전문가와 공동으로 질문, 정의 등 표준화 원칙을 개발 중이며 13개 반이 운영 중이다.10) 현재 1차 표준 항목(primary harmonised standards)과 2차 표준 항목(secondary harmonised standards)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1차 표준 항목은 인구학적 정보, 가구구성 및 관계, 민족, 건강과 돌봄 등 가구조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이며, 2차 표준 항목은 특정의 조사에 적용 가능한 개념과 질문으로 범죄, 주거, 소득, 국가정체성과 종교, 사회자본, 성정체성 등을 아우르고 있다.11) 중장기적으로 사업체(business)와 행정자료에 관한 표준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항목 표준 원칙이 거버넌스 내에서 합의가 되면, 관련 내용은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웹사이트에 제공한다(http://www.ons.gov.uk/methodology/programeandservices/harmonisation programme). [그림 1-1]의 좌측은 해당 경로를, 우측은 항목별 표준화 내용을 보여준다. 방법론 (Methodology) → 분류 및 표준화(Classifications and Harmonization) → 표준화(Harmonization)를 클릭하면, 항목별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질문과 응답보기, 조사원 지시문,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10) 13}개 조정반은 다음과 같다. ①Benefits and Tax Credits, ②Classifications, ③Consumer durables, ④Country of Birth/Migration and Citizenship, ⑤Crime/Anti-Social Behavior and Social Capital, ⑥Demographic Info, Household Relationship and Civil Partnership, ⑦Disability Health and Cares, ⑧Economic Activity, ⑨ Education, ⑩Ethnic Group, National Identity and Religion, ⑪Housing and Tenure, Accommodation Type, Length of Residence and Motor Vehicles, ⑫Income, ⑬Pension

¹¹⁾ 이 항목들을 모아 "정부 사회조사를 위한 개념과 질문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A-Z Quick Reference Guide to Harmonized concepts and Questions for Government Social Surveys)"를 발간하여 실무자들이 질문 작성 및 결과보고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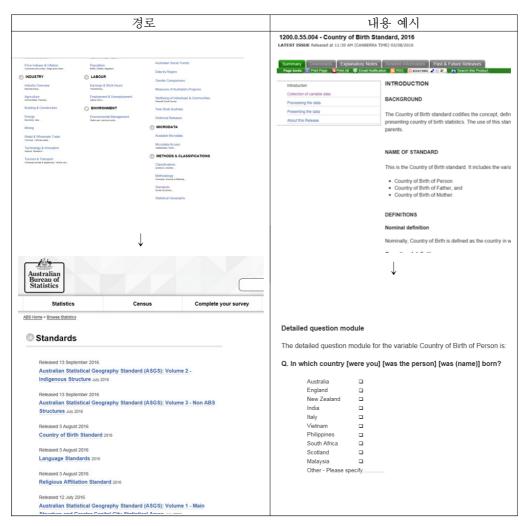


[그림 1-1] 영국 통계청 홈페이지 항목 표준화 경로 및 주요 내용

나. 호주

호주는 1997년 언어 항목 표준화를 시작으로 사회 표준(social standards) 항목과 경제 표준 (economic standards)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회 표준 항목에는 인구학적 정보, 기족과 가구, 출생국, 언어, 지역, 교육, 종교적 귀속감, 장애, 노동, 소득, 직업, 문화적 다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 표준 항목은 국민계정(System of National Accou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표준 항목에 관한 정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방법과 분류 (methods and classification) 섹션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림 1-2]처럼 방법과 분류 섹션에서 표준을 거치면 각 항목의 표준 가이드라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http://abs.gov.au/standards). 출생국가 항목을 보면, 해당 항목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자료수집, 자료처리, 자료공표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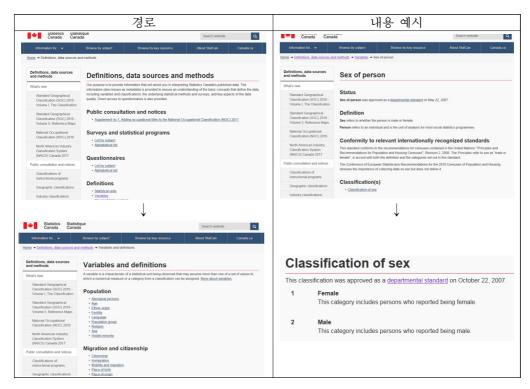


[그림 1-2] 호주 통계청 홈페이지 항목 표준화 경로 및 주요 내용

다. 캐나다

캐나다는 표준에 관한 정책(Policy on Standards)을 수립하여 일관적 명칭과 모집단 정의, 통계적 단위, 개념, 변수, 범주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연관된 항목에서 불일 치나 모호성이 발견될 경우 차이를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각 조사에서 최대한 자세한 수준에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과정에서 유연성을 제공하고, 변화 필요에 따라 사후에 소급하여 재분류(retrospective reclassification)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Statcan, 2004).

이에 따르면 표준 항목의 적용은 강제성 여부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의 승인에 따른 부령에 의한 표준(departmental standard)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음은 방법론 및 표준화 위원회(Methods and Standards Committee)의 승인에 따른 권고에 의한 표준(recommended standard)으로 부령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이 필요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부서(Standard Division)에서 승인하는 개별 통계조사에 의한 표준(program-specific standard)이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각 항목의 개념정의와 분류체계를 [그림 1-3]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http://www.statcan.gc.ca/eng/concepts/definitions/index). 정의, 데이터 소스, 그리고 방법 (Definitions, Data sources and Methods) 섹션으로 들어가 변수와 정의에서 개별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1-3]의 오른쪽과 같이 해당 항목에 대한 정의와 국제적 기준과의비교, 그리고 분류체계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림 1-3]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 항목 표준화 경로 및 주요 내용

라. 유럽통계처

유럽통계처(Eurostat)도 영국의 표준화 출발시점과 동일한 1996년 이래로 유럽 국가

간 비교 및 서로 다른 하위 인구 집단 간 비교 등을 목적으로 사회조사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럽통계처에서 제시한 표준화 원칙은 EU 정책과의 연관성 (relevance),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이해가능하고 응답자가 쉽게 보고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단순성(simplicity), 조사 수행의 용이성(ease of implementation), 실행가능성(feasibility), 낮은 응답부담, 행정자료에서 수집된 정보와의 결과표 표준화 가능성(output harmonization), 그리고 현존하는 정의 및 국제표준정의 등의 사용 여부 등이다(Eurostat, 2007).

마. 한국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2008년에 항목 표준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그 내용은 여타의 국가와 차이를 보인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항목 표준화를 지칭하는 명칭은 1차 표준이나 사회 표준 등 다양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가구 및 인구학적 정보를 포함한 사회분야 항목이라는 점이다. 반면, 한국 통계청에서 실시한 표준화 내용은 조사표 기본정보 항목과 사업체 일반현황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분야 항목에 대한 표준화 논의는 지역사회조사 매뉴얼 작성을 시발점으로 2015년부터 지역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사회조사를 작성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급격히 증가하여2016년 8월 현재 226개 시군구 중약 195개 지역에서사회조사를 작성 중에 있는데,지역사회조사 간 99개 공통항목을 선정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남상민·이희길·노형준, 2016). 이 중 지역사회조사 매뉴얼에서는 33개 항목에 대해 사회조사등과 같은 대표적인 조사의 항목 측정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는 흡연율 지표에 대한 예이다.통계청 사회조사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흡연여부를 측정하는 항목을 예로 들고있다. 그러나,이 항목은 표준화되지 않은 것이다.



[그림 1-4] 지역사회조사 항목 예시

현재까지 항목 표준화 작업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국가는 소수이다. 국가 간 항목 표준화는 차치하고서라도 국가 내에서도 여러 조사 간 항목 표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조사수행 기관의 특성 및 조사목적, 자원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분산형 통계제도인 영국 통계청은 표준화된 질문이 서로 다른 조사 내에서 유연하게 들어맞아야(fit)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하다. 일각에서는 표준화

항목이 기존 항목에 비해 보다 세부적으로 응답범주를 제시했을 경우 응답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나, 영국 통계청에서는 명확한 범주를 제시함으로서 오히려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ONS, 2016).

제5절 세분화 기준 항목의 국내 표준화 수준 분석

1. 연구방법

본 절에서는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SDGs 데이터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SDGs 세분화 기준 변수로 제시되고 있는 성, 연령, 소득, 인종, 민족, 이민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항목 중 인종, 민족, 지리적 위치를 제외한 5개 항목이다. 여기에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정도, 혼인상태, 점유형태 항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12) 2016년 5월 기준 국가승인통계 중 조사통계 내에서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33건 조사의 질문방식과 결과표 제공형태 등을 비교해 보았다. 13) 조사표 검토를 통해 질문방식과 응답범주를 비교해 보았으며, 결과표의 경우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이하 KOSIS)에 보고된 형태들을 조사하였다. 한편, 133건 조사의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사회(30건, 22.6%), 복지(18건, 13.5%), 보건(13건, 9.8%), 고용(11건, 8.3%), 교육(10건, 7.5%) 순이었다(<표 1-6> 참고).

과연 133건 조사에서 성, 연령, 소득, 교육정도, 혼인상태, 주거형태, 장애, 이민지위 항목은 얼마나 조사되고 있을까? 성과 연령은 여성이나 청소년 등 해당 계층을 목표로 한 조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조사(130건, 97.7%)에서 질문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된 항목은 교육정도(110건, 82.7%)와 소득(105건, 78.9%)이며, 가장 적게 조사되고 있는 항목은 장애와 이민지위로 각각 31건(23.3%)과 28건(21.1%)이었다(<표 1-7> 참고). 조사 항목은 해당 시점의 사회 현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장애와 이민지위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관심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민지위는 이민정책 및 이민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몇몇 조사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예: 외국인고용조사, 박사인력 활용조사,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이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과학 연구가 내국인을

¹²⁾ 단일민족국가의 특성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민족, 인종, 이민지위가 구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리적 위치는 국가승인통계에서 조사항목으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사용된 정보를 활용하여 파생된 변수(derived variable)인 경우가 많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¹³⁾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중인 기본통계와 지역사회조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민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이미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주민과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향후 이민지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조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연구대상 조사의 영역별 구성비

영역	빈도	비율
가계소비(소득)	6	4.5
경기	1	0.8
고 용	11	8.3
교육	10	7.5
교통	2	1.5
금융	1	0.8
기업경영	1	0.8
농림	8	6.0
문화	14	10.5
보건	13	9.8
복지	18	13.5
사회	30	22.6
에너지	1	0.8
인구	3	2.3
정보통신	8	6.0
주택	3	2.3
환경	1	0.8
기타	2	1.5
합 계	133	100.0

〈표 1-7〉 분석대상 항목이 포함된 조사 수

항목	빈도	비율
성	130	97.7
연령	130	97.7
교육정도	110	82.7
소득	105	78.9
혼인상태	90	67.7
점유형태	56	42.1
장애	31	23.3
이민지위	28	21.1

2. 성

가. 개요

성(性)은 연령과 더불어 한 사회의 인구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정보이다. 또한 사회과학조사에서는 드물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응답 혹은 조사원의 판단을 통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한국사회는 출생 당시 성별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부여되며 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 생애를 통해 불변하는 특성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회인구학적 항목과비교했을 때, 질문이나 응답을 받아내는 데 기술적 문제가 적으며, 조사 간 질문방식이나결과표 제공방식의 표준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노동, 교육, 경제력, 혼인상태 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성차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서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증거들은 꾸준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그 기반에 성별통계(sex disaggregated statistics)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한국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및 통계법에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승인통계에서 성을 질문한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14) 영국도 성별통계에 대한 공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policy on the publication of sex-disaggregated statistics).

그러나 최근 생물학적 특성 뿐 아니라 사회적 특성(gender)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성에 대한 분류체계 논쟁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만 일부 응답자가 자신의 사회적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성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의 문제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SDGs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질문방식

133건의 분석대상 승인통계 중 성을 질문하고 있는 조사표는 130건이다. 조사표 검토결과 성을 묻는 질문유형은 단어형과 문장형으로 구분된다. 단어형은 조사원이 직접 대면조사를 통해 조사표를 기입하는 조사에서, 문장형은 자기기입식 조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후 다른 문항의 분석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어형과 문장형을 망라하여 질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성별(121건)이었으며,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로 묻는 경우가 일부(6건) 있었다. 한편, 행정자료를

¹⁴⁾ 통계법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사항)는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 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용한 통계에서 성을 직접 묻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표 1-8> 및 <표 1-9> 참고).¹⁵⁾

〈표 1-8〉 성 항목 질문방식 분포

	구분	빈도
성		2
	성별	85
	귀하(본인, 응답자)의 성별	4
,1,13	(귀하의/자녀의) 성별은?	7
성별	(**님의)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6
	(귀하의/**님의/학생의/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7
	성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1 kod	(이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5
남여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1
주민등록	번호	2
	합계	130

성에 대한 응답범주는 거의 모든 조사표에서 남과 여의 이분형으로 동일하였다. 단, 응답범주에서 사용된 용어에서 남·녀, 남·여, 남자·여자, 남성·여성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응답태도나 자료분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용어 통일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퇴원손상 심층조사'가 유일하게 응답 범주를 남자·여자와 더불어 '양성·중성' 그리고 '불명'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결과표 작성과정에서는 남과 여로 이분하고 있다.

〈표 1-9〉 성 항목 응답범주 분포

구분	빈도
남 - 여	51
남자 - 여자	49
남성 - 여성	21
남자 - 여자 - 양성·중성 - 불명	1
기타	8
합계	130

^{15) 1}개의 숭인번호 안에 여러 개의 조사표가 있는 경우, 혹은 단일 조사표에서 같은 유형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시될 경우, 결과표 제공 형태에서 여러 버전이 있을 경우 더 자세한 질문 혹은 결과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 결과표 제공방식

성 항목에 관한 결과표는 97건의 조사에서 제시되었다.16) 결과표 제목에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성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91건), 모든 결과표는 남과 여로 분류되었다. 다만 사용용어에서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남자·여자, 남성·여성, 남·여 로차이가 있었다(<표 1-10> 참고).

구분	\ .	.0, 0 0	1 = 1 - 100 1 = -	
			구분	

〈표 1-10〉성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분포

남 - 여	9
남자 - 여자	62
남성 - 여성	25
남학생 - 여학생	1
<u>합</u> 계	97

빈도

라. 해외사례¹⁷⁾

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조사 간에 높은 표준화 수준을 띠고 있다. 표준화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구분하여 질문하는 시도가 있다는 점이다. 영국과 호주의 통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도는 특히, SDCs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하다.

영국에서는 성과 관련된 표준화된 질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매트릭스 형태의 가구 현황표에 성을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답자의 자발적인 응답이 없거나 관찰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만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sex?)'로 질문하며 응답범주는 남과 여이다. 결과표에서도 동일하게 남과 여 총합계로 분류표를 제시하도록 표준화하고 있다. 질문 및 결과표 형식은 생물학적 성 과 사회적 성 두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주: 동일 조사에서 항목에 따라 남자, 남성이 중복하여 사용된 5건을 남자 - 여자 범주에 합산하여 계산

¹⁶⁾ 일부 승인통계의 경우 KOSIS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결과표 합계와 조사(혹은 질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¹⁷⁾ 참고문헌 인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은 ONS(2016), 호주는 http://abs.gov.au/standards, 캐나다는 http://www.statcan.gc.ca/eng/concepts/definitions/index를 참고하였다.

한편, 호주에서는 두 개의 성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2015년 호주 법무부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Recognition of Sex and Gender)에 따라 통계청은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성을 질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6년 센서스에서부터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18)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적 성은 남·여·기타 세 범주로조사되며, 결과표에는 적합하지 않음(not stated/inadequately stated) 범주가 추가된다. 특히호주에서는 영국과 달리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개념을 차별화시키고 있다. 생물학적성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남과 여로 구분되며, 어떤 경우 양성 혹은 무성, 다른 성적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한다. 반면에 사회적성은 남성성(masculine) 혹은 여성성(feminine)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평가에기인하는 것으로 항상 남과 여로 규정될 수 없으며, 출생당시 부여된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다음의 그림은 생물학적성과 사회적성에 대한 표준화된 질문안과결과표를 나타낸 것이다(<표 1-11> 참고).

캐나다 통계청의 성에 대한 분류체계에서 주목해 볼 점은 다른 국가에서 남과 여 순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여와 남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 통계청에서도 남-여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순서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과 다른 조사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남(male)을 우선 배치하였음을 명시한 바 있다.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적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응답자의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을 묻는 항목 또한 생산되고 있다. 성 소수자의 성적 정체성을 어떠한 응답범주로 측정할 것인가, 혹은 질문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영국은 이 항목을 2차 표준 항목으로 규정하고, 대면조사·전화조사·응답자기입식에따라 적합한 질문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응답범주는 조사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며, 질문방식 및 응답을 얻어내는 방식에만 차이가 있다. <표 1-12>는 그 중 자기기입식조사의 예이다.

¹⁸⁾ 생물학적 정보를 알아야만 하는 조사, 예컨대 신체적 정보가 필요한 의학적 평가에 연관된 조사에서만 생물학적 성을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1-11⟩ 호주 성 항목 질문 및 결과표 표준안

Standard Question Module - Sex	
For the collection of sex, the following standard tick box question module should be used. The 'Male' response option to tradition in the ABS and alignment with other collections, both in Australia and overseas.	n is shown first due
What is your sex? Please [tick/mark/select] one box. Male Female Other, please specify	
STANDARD QUESTION MODULE - GENDER	
With some minor exceptions, question modules and collection procedures for gender mirror those outlined previously	for sex.
For the collection of gender, the following standard tick box question module should be used. The 'Male' response optalign with the sex standard question module.	tion is shown first to
What is your gender? Please [tick/mark/select] one box. Male Female Other, please specify	
STANDARD OUTPUT CATEGORIES	
The standard output categories for both sex and gender are:	
 Males 	
Females	
Other	
 Not stated/Inadequately described 	

〈표 1-12〉 영국 성적 정체성 질문 표준안

ALL AGED 16 OR OVER

Which of the following options best describes how you think of yourself?

- 1. Heterosexual or Straight,
- 2. Gay or Lesbian,
- 3. Bisexual,
- 4. Other
- Prefer not to say

마. 요약 및 제언

성에 대한 항목 구성 및 보고형식은 국제적으로 다른 어떤 변수에 비해 표준화 수준이 높다. 국내에서도 용어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비교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생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던 성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변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성의 분류체계 및 응답범주 나열 순서 등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과 여로 분류되는 이분법적 응답범주에 제3 범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시에 남과 여의 순서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예: 캐나다).

생물학적 성과 구별되는 사회적 성에 대한 번역 문제 또한 쟁점화될 것이다. 현재는 여러 영문 조사표에서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성별로 일관적으로 번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별로 번역할 경우, 조사 지침서상에서 언급이 없는 한 기존의 생물학적 성을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회적 성에 대한 질문임이 구별되도록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성인지'라는 번역을 참조해볼 만하다. 국내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한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인데, 이것을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http://gsis.kwdi.re.kr).

아울러, 현재는 한국사회의 성 소수자 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기 어렵지만, 성 소수자의 권리를 점차로 확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와 성 소수자들이 성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지위 측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큰 만큼, SDGs의 기본 취지에 입각하여 성 소수자에 대한 성별 구분을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 으로 필요하다.

3. 연령

가. 개요

연령은 성과 함께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꼽힌다.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 태도, 행동방식, 공유하고 있는 문화 등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연령은 응답자의 타고난(inherent) 속성으로, 태어난 날로부터 현재(혹은 특정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연령은 변수의 속성상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항목으로 많은 국가에서 생년월일을 측정하는 질문이 표준화되어 있는 편이다.

연령이 국제적으로 매우 잘 표준화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연령 측정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다.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한 연령 vs 주민등록상 연령, 만 연령 vs 연 연령의 개념이 혼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양력 vs 음력도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연령'이라는 용어가 응답자에게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개념으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질문측정방안과 분류체계가 요구된다.

나. 질문방식

UN 권고안에 따르면 연령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질문방식은 출생 년월일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130건의 승인통계 중 출생년월일을 묻는 경우는 1/4 정도 (46건)였으며, 출생년 혹은 출생년월만 묻거나 이외에 출생년월일을 묻지 않고 직접 세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령은 단일항목으로 묻는 경우와 함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두 개 혹은 세 개의 질문을 병행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표 1-13>과 <표 1-14>처럼 주민등록번호와 만 연령, 생년월일, 띠, 집에서 지내는 생일 등 여러 경로로 묻고 있는데, 노인실태조사나 농림 어업조사 등 잠재적 응답자층이 특정한 연령 측정방법에 더 익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띠, 집에서 세는 나이 등을 부가질문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 세가지 질문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띠-출생년월(주민등록상)-만 연령을 묻거나, 실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만 연령을 묻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표 1-13〉 연령 항목 질문방식: 단일형

	구분	빈도
출생년	 출생연도 (귀하의) 출생년도는? 출생년도(실제기준) 생년(양력) 태어난 연도(주민등록상) 출생년도를 기록해 주십시오. 	23
출생년월	 생년월 출생년월 출생년월(양력) 실제 출생연월 (양음력 / 출생년월) 실제 생년월 태어난 년도 월(주민등록상) '이 학생'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실제 태어난 생년과 월을 아래에 써 주십시오. 	16
출생년 월일	- 생년월일 - (귀하의) 실제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출생년월일 -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 - 생년월일(실제 생년월일) -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십시오.)	36

	구분	빈도
연령	연령만 연령귀하의 연령은?연령을 말씀해 주세요? ('세'는 나이 기준)	25
나이	 나이 만 나이 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현재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나이로 응답해주십시오. 	10
기타	주민등록번호 기재	1
	합계	111

⟨표 1-14⟩ 연령 항목 질문방식 분포: 복합형

구분	빈도
나이(연령) + 출생연도	2
나이(연령) + 생년월일	4
나이(연령) + 출생일	1
만 연령 + 생년월	3
만 연령 + 생년월일	2
만 연령 + 띠	1
생년월일 + 계절	1
주민번호 기재 + 생년월일	2
나이(연령) + 띠 + 생일	2
나이(연령) + 띠 + 생년월	1
합계	19

연령은 질문 내용에 따라 생년월일 혹은 만 나이를 기입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개방형 질문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130건 중 125건이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였으며, 범주형으로 묻는 경우는 5건에 불과하였다. 범주형 질문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10세별로 연령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15〉 연령 항목 응답범주 분포

구분	빈도
	20
□□□□년 □□월	14
년월	5
19□□년 □□월 □□일	32
만세	30
세 나이 공란	9
나이	1
공란	13
범주형	5
기타	1
합계	130

한편, 만 연령이 익숙하지 않아 잘못된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몇몇 조사에서는 조사표에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다.

〈표 1-16〉만 나이 계산지침 예시

- * 만 나이 계산법
- ①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통상 현재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나이(올해년도 (2015년)-출생년도=만 나이)
- ②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통상 현재 나이에서 두 살을 뺀 나이(올해(2015년)-출생년도.1=만 나이)

다. 결과표 제공방식

연령 항목의 결과표 제목은 주로 연령별(49건)이나 연령(40건) 등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외 연령대별, 연령계충별, 연령군, 연령분포, 구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분류체계는 10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0세에서 시작해 9세로 끝나는 구분이 47건, 연령대 즉 10대, 20대, 30대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30건이었다(<표 1-17> 참고). 이 두 유형은 표현 방식이 다소 상이할 뿐 사실상 같은 연령분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유형과 차별적으로 동일한 10세 간격에서도 1세에서 시작해 0세로 끝나거나(31~40세), 5세에서 시작해

4세로 끝나는 경우(25-34세)도 각각 2건과 1건 있었다. 이밖에도 5세 단위의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도 16건이 있었으며, 드물지만 유아동-청년-성인과 같이 생애주기별로 구분을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5세 및 10세 간격에 대한 합의지점은 있으나, 10세 간격에 대한 표현방식은 매우 상이하였다. <표 1-18>은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일 간격에 대한 다양한 표현방식을 볼 수 있다.

⟨표 1-17⟩ 연령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구분	빈도
각세	3
5세 간격	16
10세 간격 구분 1: 30 - 39세	47
10세 간격 구분 2: 30대	30
10세 간격 구분 3: 31 - 40세	2
10세 간격 구분 4: 25 - 34세	1
기타	5
합계	104

〈표 1-18〉 10세 간격 표현방법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예시 4	예시 5	예시 6
29세이하	29세이하	30세미만	30세미만	30세미만	30대이하
30 - 39세	30세이상 39세이하	30 - 39세	30 - 40세미만	30대	30대
40 - 49세	40세이상 49세이하	40 - 49세	40 - 50세미만	40대	40대
50 - 59세	50세이상 59세이하	50 - 59세	50 - 60세미만	50대	50대
60세이상	60세이상	60세이상	60세이상	60세이상	60대이상

라. 해외사례

UN 센서스 권고안에 따르면, 연령은 태어난 날부터 특정시점까지 경과시간으로 정의되며 상당수의 국가가 출생년월일을 질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19) 항목표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는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생년월일에서 정확한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지난생일에 몇 살이었는지를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20) 이는 만 연령을 사용

¹⁹⁾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월을 모를 때는 해당 년의 6월을 기준, 특정 월 중 일을 모를 경우 15일을 기준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²⁰⁾ 지난 생일에 몇 살이었습니까? (What was your age last birthday? or What is age in complete years?)

하는 사회에서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에서 주목해 볼 점은 표준화된 결과표 양식이다. 영국과 호주,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각세, 5세, 10세 간격의 연령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5세 간격과 10세 간격표준안이 국가에 따라 분기연령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5~10세, 11~15세, 16~19세의 연령그룹을 제시한 반면 호주와 캐나다는 5~9세, 10~14세, 15~19세의 간격을 제시하고 있다. 최고령 연령 또한 영국은 85세, 호주는 105세, 캐나다는 100세로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19세 미만 집단과 최고 연령에서의 차이를 제외하고 허리 부분에서의 연령 간격은 세 국가 모두 0, 4세로 시작하여 5, 9세로 끝나는 것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10세 간격의 경우에 25~34세, 35~44세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이 한국(20~29세, 30~39세)과 차이이다. UN의 표준화된 국제연령분류에 대한 잠정 가이드라인(Provisional guidelines on standard international age classifications)에 따르면, 인구조사·사회조사·건강조사 등의 종류에 따라서 연령구분의 세분화 수준이 차별적이다. 그러나 분기점이 되는 연령은 동일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UN, 1982).

영국 호주 캐나다 0 - 4 years Harmonised Harmonised Harmonised Standard 1 0-24 Standard 3 0-15 Standard 2 0-24 Standard 4 Standard 10 year grouping 10 - 14 years 15 - 19 years 20 - 24 years 5-10 11-15 The standard ten year output categ here a combination of five and ten 25 - 29 years 16-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30 - 34 years 25-44 - 39 years - 44 years 25-34 35-44 45 - 49 years 25-64 45-64 45-54 55-64 70 - 74 years 65-74 65-74 65-74 65-74 75+ 75+ 75-84 80-84 90 - 94 years 85+ All age All age All age

〈표 1-19〉 영국, 호주, 캐나다의 연령 항목 결과표 표준안

바. 요약 및 제언

한국 사회에서 연령 항목 질문방식은 연구의 목적 혹은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품질 높은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생년월일을 기입한 후 자료처리 과정에서 연령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연령 질문 작성 시주의할 점은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연령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질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 중 어느 것을 묻는 지, 만일 생년월일이 아닌 세는 연령으로 질문한다면 만 연령인지, 연 연령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출생년월일 혹은 만 연령에 대한 단일의 표준이 제공되지만, 우

리나라에서는 각 내용에 적합한 표준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결과표 또한 5세와 10세 간격으로 제공할 경우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국내승인통계에서 10세 간격은 0세에서 시작하여 9세로 끝나는 10~19세·20~29세로, 5세 간격은 0, 5세로 시작하여 4, 9세로 끝나는 10~14세·15~19세 구분 간격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격 구분은 의도된 표준화라기보다는 조사 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표준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 통계청 혹은 국가단위에서 이에 대한 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 10세 단위 구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30~39세 기준이, 국제적 분류기준인 25~34세, 35~44세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

4. 교육정도

가. 개요

교육은 시민으로서, 또 소득자로서 더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길이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만약 고등교육이 너무 비싸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높은학위를 추구할 수 있고 더 높은 학위에 대한 보상 자체가 크다면 교육은 가난한 사람들의병목이 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Sachs, 2015).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개인의 교육정도가 이후 직업경력 및 소득규모 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정도, 직업경력,소득규모 등과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것을 밝혀왔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점차로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정도의 세대 간 전이 경향은 SDGs가 미래 세대를주요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양질의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고 평생 교육 기회를 증진할 것을 SDGs에서 네번째 목표로 다루고 있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UN은 SDGs 데이터세분화 변수에 교육정도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경제·사회 환경의전 분야에서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나. 질문방식

통계청 표준용어에 따르면, 교육정도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교육 중 이수한 최고학력을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제도에서 어느 단계까지 도달하였는가와 그 단계를 최종적으로 마쳤는지, 만일 아직 교육을 받고 있거나 중단을 하였다면 해당 단계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로 구성된다. 정규교육과정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4년제 미만),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원 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교육정도를 묻고 있는 조사는 총 110건이었는데 학교와 해당학교의 이수여부를 묻는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만 묻는 경우는 9건, 이수여부에 따라서 학년을 추가적으로 묻는 경우는 6건이었다. <표 1-21>은 교육정도를 묻는 항목의 질문방식이다. 질문에 포함되는 핵심용어는 교육(47건), 학교(17건), 학력(43건)이다.

〈표 1-20〉 교육정도 항목 질문구성

구분	빈도
학교	9
학교 + 이수여부	90
학교 + 이수여부 + 학년	6
기타	5
합계	110

〈표 1-21〉 교육정도 항목 질문방식 분포

	구분	빈도
교육 수준	- 교육 교육수준 / 수료여부 (이수여부, 졸업여부, 수학여부) - 귀하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13
교육 정도	- 교육정도 - 교육정도 / 수학 여부 (졸업여부) - 교육정도 ((최종)학력 / 수학여부, 졸업여부, 이수여부)	21
정규 교육	- 귀하는 정규교육을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 교육으로 봅니다. (재학인 경우)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학년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 학교 / 학년	1
학교	 OO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귀하께서는 그 학교를 마치셨습니까? 졸업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재학, 휴학, 중퇴, 수료 포함) 그 학교를 마치셨습니까? 이수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16

	구분	빈도
학력	- 학력 - 학력 / 이수여부 - 학력 (학교(급) / 이수여부, 상태)	9
	-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11
최종 학력	- 최종학력 - 최종학교 / 졸업여부, 이수여부 / (학년) - 최종학력 / 졸업여부 / 학년	6
	 현재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학력 / 졸업여부 / 학년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학교급 / 상태구분 	17
기타	- 취득학위	3
	합계	110

<표 1-22>는 교육정도 질문항목의 응답범주 분포이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 범주는 무학·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대학교·석사·박사의 8개 범주 (37건)이며, 다음으로 석사와 박사를 구분하지 않고 대학원으로 합친 경우가 많았다 (32건). 이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39건은 유형별로 많게는 5건 적게는 1건으로 나타나, 다양한 응담범주 유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변이는 시작단계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인지, 대학(4년제 미만)과 대학교(4년제 이상)을 구분하였는지, 대학원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경우의 수이다. 일부 조사에서 무학을 문자의 해독여부에 따라 구분하거나(4건: 고령화 패널 조사, 남해군노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단양군노인실태조사), 무학 이외에 서당 및 한학(1건)을, 혹은 어린이집(1건)을 넣기도 하였으며, 장애 특수학교를 넣은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응답범주에서 사용된 용어의 혼란이 교육정도 항목 분석과정에서 나타났다. <표 1-22>에는 대학과 대학교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나 실제 조사표에서 대학 은 2-3년제 대학, 4년제 미만, 3년제 이하, 전문대, 2년제 대학 등으로, 대학교는 4년제 대학, 4년제 이상, 대학교(4년제 이상), 대학교, 4년제 대학 및 5-6년제 대학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표 1-22〉 교육정도 항목 응답범주 분포

구분	빈도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4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4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9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대학원	32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석사 - 박사	37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대학원	2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석사 - 박사	4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3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5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대학원	1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석사 - 박사	1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2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대학원	1
고등학교 - 대학 - 대학교 - 석사 - 박사	1
합계	108

주: 총 110건 분석대상 조사 중 수학년수(정신질환실태조사)를 물어본 조사, 청소년대상 조사급(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을 제외한 108건 조사의 응답범주를 구분한 결과임

다. 결과표 제공방식

일반적으로 결과표는 질문의 응답범주를 축소한(collapsed) 형태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교육정도 항목의 경우 졸업과 재학 등에 따라서 결과표가 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급과 이수여부에 대한 질문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대학원 석사 과정인 경우, 응답과정에서는 대학원 석사에 응답하고 재학 중이라고 표시가 되나, 결과표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학교 졸업에 해당할 수도, 대학원 재학이상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 표 1-23>은 교육정도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분포인데 총 81건 중 32건이 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17건)와 초졸이하-중졸-고졸-대졸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15건)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분류체계는 1건에서부터 많게는 6건의 사례를 포함하는 정도로 조사에 따라 다양한 결과표 분류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1-23〉 교육정도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분포

구분 무학 - 초 - 중 - 고 - 전문대 - 대학교 - 대학원	빈도
17 2 6 2 664 474 474	4
무학 - 초 - 중 - 고 - 대학이상	3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2
무학 - 초중퇴 - 초졸 전문대재학 - 전문대중퇴 - 전문대졸 - 대학교	
재학 - 대학교중퇴 - 대학교졸 - 대학원재학 - 대학원수료이상	1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학재학이상	1
무학 - 고졸미만 - 대재및중퇴 - 전문대졸 - 대졸이상	1
무학 - 초 - 중 - 고 - 전문대이상	1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1
초졸미만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1
초졸미만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학교졸 - 대학원재학이상	1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석사이상	1
무학 - 초중고재학 - 초졸 - 중졸 - 고졸 - 대재이상	1
초졸이하 - 중졸 - 고졸 - 대졸이상	15
초졸이하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학교졸이상	2
초졸이하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학교졸 - 대학원졸이상	1
초졸이하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학교졸 - 대학원재학이상	1
초졸이하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학교졸 - 석사 - 박사	1
초졸 - 중졸 - 고졸이상	1
초졸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재학이상	1
초 - 중 - 고 - 전문대 - 대학교이상	1
초이하 - 중 - 고 - 전문대 - 대학교 - 대학원이상	2
중졸이하 - 고졸 - 대졸이상	17
중졸이하 - 고졸 - 대학이상	6
중졸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이상	3
중졸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이상 중학교 - 고등학교 - 정문대학 - 대학 - 대학원	1
중약교 - 고등약교 - 전눈내약 - 내약 - 내약원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이상	1
중역교 - 고등역교 - 대역교이경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 - 4년제 - 대학원이상	1
	2 1
고졸이하 - 전문대를 이상 고졸이하 - 대학재학 이상	1
고졸이하 - 전문대졸 - 대졸 - 석사졸	1
고졸이하 - 대학재학 - 대졸 - 대학원졸이상	1
고졸이하 - 대졸 - 대학원 이상	1
고 - 전문대 - 대학교 - 석사 - 박사	1
고졸이하 - 전문대졸 - 4년제졸 - 석사졸 - 박사졸이상	1
합계	81

그런데, 일부의 결과표에서는 졸업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아서 해당 범주에 재학 혹은 중퇴자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무학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이상인 분류체계에서 대학 이상은 대학졸업이상인 경우와 대학재학 혹은 중퇴이상인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라. 해외사례

영국에서는 교육정도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변수는 최고학력수준이기는 하나 학위의 중복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질문과 범주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과 이 정보보다는 국민들이 학위자격(academic qualification)과 직업능력(vocational qualification)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과 결과표를 표준안으로 제공하고 있다(<표 1-24>, <표 1-25> 참고).

〈표 1-24〉 영국 교육정도 항목 질문 표준안

ANY QUALIFICATIONS

- Do you have any educational qualifications for which you received a certificate?
 - Yes
 - No

IF QUESTION 1=NO

WHICH QUALIFICATIONS

- Do you have any professional, vocational or other work-related qualifications for which you received a certificate?
 - Yes
 - 2. No

IF QUESTION 1=YES OR QUESTION 2=YES

HIGHEST QUALIFICATION

- Was your highest qualification...
 - 1. at degree level or above
 - 2. or another kind of qualification?

〈표 1-25〉 영국 교육정도 항목 결과표 표준안

Provisional Output Categories: Educational Attainment Degree, or Degree equivalent and above XXXX Other qualifications XXXX No Qualifications XXXX

호주에서 최고학력 항목은 학문 영역(field of study) 혹은 정규교육 내에서 달성한 최고로 높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로 정의된다. 다음 <표 1-26>과 <표 1-27>은 종이조사 표에 기반한 자기기입식 조사표에서 교육정도에 대한 질문과 결과표 표준안이다. 이와함께 Postgrad.Deg. 등과 같은 축약명(short name)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토착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s)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년과 6년 이하의 하위 범주가 추가로 세분화되었다.

〈표 1-26〉호주 교육정도 항목 질문 표준안

Calf as mund	stad callections (Consus 9 names based	l cellections)	
-	eted collections (Census & paper based		3.61
Q1	What is the highest year of primary or s	secondary school lyou have	Itne person has completed?
	Mark one box only		
	Year 12 or equivalent	_	
	Year 11 or equivalent		
	Year 10 or equivalent	_	
	Year 9 or equivalent		
	Year 8 or below		
	Did not go to school		
Q2	[Have you] [Has the person] completed any Mark one box only	educational qualification (inc	luding a trade certificate)?
	No	0	No more questions
	No, still studying for first qualification	_	No more questions
	Yes, trade certificate/apprenticeship	_	
	Yes, other qualification	0	
Q3	What is the level of the <i>highest</i> qualification For example, trade certificate, bachelor de Level of qualification		• •
Q4	What is the main field of study for [your] [the For example, plumbing, history, primary so Field of study		•
Q5	In which year did [name/you] complete	•	
	Prior to 1990	_	No more questions
	1990 onwards		
Q5A	Enter year qualification was completed	(in the format yyyy)	

〈표 1-27〉호주 교육정도 항목 결과표 표준안

Level of highest educational attainment
The following are the recommended standard output categories for data on 'Level of highest educational attainment':
Postgraduate Degree
Graduate Diploma/Graduate Certificate
Bachelor Degree
Advanced Diploma/Diploma
Certificate III/IV
Year 12
Year 11
Year 10
Certificate I/II
Year 9 or below
Certificate not further defined
Level not determined

캐나다는 교육정도를 <표 1-28>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영국과 달리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 내 교육 시스템을 반영한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1-28〉 캐나다 교육정도 분류체계

- 1. Less than secondary school graduation (highest)
 - 1.1 Grade 8 or equivalent or lower (highest)
 - 1.1.1 Kindergarten or never attended school or equivalent (highest)
 - 1.1.2 Grades 1-4, or equivalent (highest)
 - 1.1.3 Grades 5-8, or equivalent (highest)
 - 1.2 Some secondary education (highest)
 - 1.2.1 Grade 9-10, or equivalent (highest)
 - 1.2.2 More than grade 10 without secondary school completion, or equivalent (highest)
- 2. Secondary school diploma, or equivalent (highest attainment)
- 3. Some postsecondary education (highest)
- 4. Postsecondary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highest)
 - 4.1 Postsecondary certificate or diploma below bachelor level (highest)
 - 4.1.1 Apprenticeship or trades certificate or diploma (highest)
 - 4.1.2 College, CEGEP, or other non-university certificate or diploma (highest)
 - 4.1.2.1 Program of 3 monhts or more but less than 1 year (highest)
 - 4.1.2.2. Program of 1 to 2 years (highest)
 - 4.1.2.3 Program of more than 2 years (highest)
 - 4.1.3 University certificate or diploma below the bachelor level (highest)
 - 4.2 Bachelor's degree (highest)
 - 4.3 University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above bachelor level (highest)
 - 4.3.1 University certificate, diploma or degree above bachelor level (highest)
 - 4.3.2 Degree in medicine, dentistry, veterinary medicine or optometry (highest)
 - 4.3.3. Master's degree (highest)
 - 4.3.4 Earned doctorate (highest)

마. 요약 및 제언

교육정도는 범주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사 간 표준화는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주도의 교육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답범주 간 세분화 정도는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합의된 분류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학과 대학교에 대한 용어상의 차이와 구분 여부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교육정도에 대해 예상되는 국제적 이슈는 각 국가 간 교육제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초등교육 수료가 항상 다른 국가의 초등교육 수료와 같은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고할 때는 각 교육단계와 더불어 교육 연수를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료수집 단계서도 이를 고려한 항목 설계가 필요하다.

5. 소득

가. 개요

소득은 경제적 웰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요소이다. 소득이 낮을 경우, 최소 생활수준 (standard of living)을 지지할 수 있는 자원 접근성이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SDGs 제 1 목표 또한 모든 수준에서의 빈곤을 종식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표 1.1.1과 지표 1.2.1에서는 국제적 기준의 그리고 국내 기준의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DGs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력 있는 사회 구현에서 가장 뒤처져있는 집단의 의미가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 질문방식

133건의 승인통계 중에서 소득은 105건에서 조사되고 있다. <표 1-29>와 <표 1-30>은 소득 항목의 질문과 응답범주를 유형별로 제시한 것이다. 67건의 조사에서 가구소득을, 30건의 조사에서 개인소득을 그리고 8건의 조사에서 개인과 가구소득을 모두 질문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표준용어에 따르면, 소득은 가구와 가구원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사업을 경영해 얻은 수입 중 가계로 전입된 소득, 이자배당금 등 재산소득, 가구 간 또는 정부·비영리단체로부터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소득을 포함하는 경상소득과 경조,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소득은 특화된 조사에서만 소득원천별로 자세히 묻고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1개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개인소득 혹은 가구소득 외에 준거기간에 따라 연간소득과 월소득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대부분 월평균 소득을 묻고 있었다. 일부 조사에서 임금의 지급형태인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당제, 시급제 여부를 질문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급형태에 따른 소득금액을 묻기보다는 소득주기 질문과 함께 월평균임금을 별도로 질문하고 있다. 한편, 세금공제여부에 따라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구분되었으며, 소득원천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총소득에 따라 소득의유형이 달라지기도 한다.

〈표 1-29〉 소득 항목 질문방식 분포

	구분	빈도
	- 연간 소득 - 연간 소득(세전) - 연간 총 근로 소득(세전 기준)	7
개인소득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수입/임금(세전) 월평균 소득(세후) 월평균 임금(세전과 세후 모두) 월 소득 / 월 수입 / 급여 급여형태에 따른 금액 	22
	-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 소득	1
	- 연간 소득 - 연간 소득(세전) - 연간 소득(세후)	10
가구소득	 월평균 (총)소득 월평균 소득/수입 월평균 (총)소득(세전) 월평균 소득(세후) 월평균 (총)소득(실수령액) 가족의 월평균 수입 	57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개인과 가구의 소득의 종류 및 월평균 총소득 본인과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 본인과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세전) 개인 월평균 임금(실수령액)과 가구 월평균 총소득 본인 월평균 임금(세전)과 가구 월평균 총수입(세전) 급여형태별 개인 월평균 금액(세전)과 연간 가구 총 근로소득 	8
	합계	105

소득에 대한 응답은 주로 보기를 선택하는 폐쇄형(60건) 방식이 소득을 직접 기입하는 개방형(39건) 방식보다 많았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등 일부 조사에서는 소득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후 소득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대략 얼마 정도인지를 폐쇄형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소득 항목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다.

개방형의 경우에 금액제공방법이 자리수를 네모 칸으로 구분한 경우와 괄호 혹은 밑줄로 구분한 경우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 다수였으나 원과 천원인 경우도 있었으며, 이 중 억 단위를 별도로 표시해 준 경우도 있었다. 폐쇄형으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는 그 구간 간격 및 최고점·최저점이 조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1-30〉 소득 항목 응답범주 분포

	구분	빈도
	만원 []	14
	월 □□□□□만원 월 평균 만원 월평균 총소득 □□□□□□□□ 만원 (세금공제전) 월평균 □□□□□만원 (세후) 월 평균 소득 만원	14
금액 기재	연간 만원 연총액 만원 연수입 () 연소득 세후 ()만원	6
	(급여형태에 따라 별도 기재) 원 (금여형태에 따라 별도 기재) 만원	2
	공란에 기입	3
보기선택		60
기타	금액과 보기선택 둘 다 질문하는 경우 등	6
	합계	105

월평균 가구소득을 예로 보면, 동일 유형 내에서 구간의 차이가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단위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 최고점도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등 다양하였다(<표 1-31> 참고). 또한 그 단위를 구분해주는 표현방식도 일관적이지 않았다. 예컨대 구분 시작점과 구분 끝점에 이상과 이하를 모두 표현한 경우(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가 있는가 하면, 끝점에만 미만 단위를 표현한 경우(100만원~200만원 미만), 시작점과 끝점 모두 단위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100만원~200만원), 시작금액에는 만원 단위까지 생략한 경우(100~200만원)도 있었다. 특히, 5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51~100만원, 101~150만원으로 표현하여 응답자 스스로 1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소득없음을 별도의 응답범주로 제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중요한 측정 이슈 중 하나이다.

(표 1-31) 월평균 개인 및 가구소득 응답범주 예시

4元級。	50만원 이하	100만원 미만	수지없음	10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51 - 100만원	100 -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50 - 100만원 미만	101 - 150만원	200 - 3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00 - 150만원 미만	151 - 200만원	300 - 4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 500만원 미만
150 - 200만원 미만	201 - 250만원	400 - 5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200 - 250만원 미만	251 - 300만원	500 - 600탄원 미탄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50 - 300만원 미만	301 - 350만원	년 등급00 <i>2</i> - 009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300 - 350단원 미단	351 - 400만원	7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350 - 400만원 미만	401 - 450만원	기타()		
400 - 450만원 미만	451 - 500만원			
450 - 500만원 미만	501만원 이상			
500 - 550만원 미만	기타/무응답			
550 - 600만원 미만				
600 - 650단원 미단				
650 - 700만원 미만				
700 - 750만원 미만				
750 -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다. 결과표 제공방식

앞서 보았듯이 소득은 분석단위, 주기, 세전 및 세후여부 등에 따라서 내용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표 제목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표 1-32>에서 보듯 결과표 제목을 통해 소득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단순히 소득구분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월소득인지, 가구소득인지, 세전소득인지를 구분해 낼 수가 없다. 월평균소득 혹은 연소득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표 1-32〉 소득 항목 결과표 제목 분포

구분	빈도
가구소득/소득수준/소득기준/소득별/	20
월평균 수입/임금/소득/총소득	18
소득구분/수준/계층별/구간별/분위별	15
가구(가족) 월평균 수입/소득/소득별/총소득별/실질가계소득	13
연간소득, 연가구소득별, 지난 1년간 가구 총소득	5
기타	5
 합계	76

소득항목 결과표는 주로 100만원 단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금액이 제시된 경우는 드물었다. 소득의 절대 금액 못지 않게 전반적인 분포 및 상대적인 소득파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의 범주를 상·중·하, 고·중·저 혹은 분위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표 1-33> 참조).

(표 1-33) 소득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분포

구분	빈도
구간소득	60
분위소득	3
평균소득	6
혼합형	7
합계	76

라. 해외사례

영국의 경우, 소득 항목은 소득원천 → 소득 → 타가구원에게 동일 유형의 질문 → 합산소득에 대한 확인질문 순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소득원천 질문은 응답자가 소득을 응답하기 위해 어떠한 소득원천을 고려해야 하는지 환기시켜 주는 기능적 역할을 하므로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며, 그 범주가 포괄적이지도 상호배타적이지도 않다. 소득원천 질문 이후에 묻는 소득 질문은 소득세, 보험료 등을 제외하기 이전의 모든 소득원천으로부터 도출되는 총소득을 묻는다. 영국의 소득 항목 표준안은 세부적인 수준까지 파악하는 기본질문(a full harmonised set)과 요약질문(abridge set)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본질문은 38개 응답범주로 구성된다. 그 최대값이 주간(weekly) 소득 1,000파운드이상, 월소득 4,333 파운드이상, 연소득 52,000 파운드이상이다. 그리고 주간소득이 700 파운드이상의 고소득자일 경우 연소득에 대한 추가질문을 한다(<표 1-34> 참조). 조사에따라 요약질문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요약질문은 기본질문에 비해 응답범주가 덜 세분화되어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지 않아 비교적 간단하게 응답할수 있다. 주간소득을 예로 들면, 그 응답범주가 12개로 축약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질문 혹은 요약질문으로 가구대표자의 소득을 파악한 이후 다른 가구원에 대한추가소득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합산된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이측정된다.

소득에 대한 결과표 제공방식은 현재 영국 통계청 내에서 논의 중인데, 모든 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균등화된 가구총소득의 분위수(quintile groups of households ranked by equivalised gross household income)가 제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 균등화조정은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형태를 반영한 맥클리멘트(McClements)의 균등화 척도로이루어진다. 대안으로 균등화된 가구 순소득 분위수(quintile groups of households ranked by equivalised net household income)와 가구 주간총소득(gross weekly household income)에 대한소득구간(income bands)도 논의되고 있다. 순소득의 경우 유럽통계처에서 선호하는 측정치이기는 하나 시계열 단절의 문제, 순소득보다 총소득에 대한 인지(cognition) 용이성, 그리고소득 측정에서 부가급부(housing benefits, council tax benefit 등) 포함 여부로 현재 순소득보다 총소득을 측정하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영국은 균등화된 총소득에 대한 5분위소득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균등화된 순소득에 대한 5분위와 주간총소득에 대한소득구간을 결과표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때로는 분위소득보다 소득구간에 대한 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일반 집단과 고소득자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응답구간을 표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 1-34〉 영국 소득 항목 질문 표준안

IF HRP OR SPOUSE/PARTNER

SOURCES OF INCOME

This card shows various possible sources of income. Can you please tell me which kinds of income you (HRP) (and spouse/partner) receive?

SHOW CARD

CODE ALL THAT APPLY

- 1. Earnings from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 2. Pension from a former employer
- 3. State Pension
- 4. Child Benefit
- 5. Income Support
- 6. Other State Benefits
- 7. Tax Credits
- 8. 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 9. Interest from savings etc.
- 10. Other kinds of regular allowance from outside the household
- 11. Other sources e.g. rent
- 12. No source of income

IF HRP OR SPOUSE/PARTNER

BASIC QUESTION

 (I've just been asking you about where you both get your income from but can I first ask about HRP's income.) Will you please look at this card and tell me which group represents (HRP's) total income from all these sources before deductions for income tax, National Insurance etc.

ENTER BAND SHOW CARD

WEEKLY	MONTHLY	ANNUAL
Up to £9	Up to £42	Up to £519
£10 up to £19	£43 up to £85	£520 up to £1,039
£20 up to £29	£86 up to £129	£1,040 up to £1,559
£30 up to £39	£130 up to £172	£1,560 up to £2,079
£40 up to £49	£173 up to £216	£2,080 up to £2,599
	Up to £9 £10 up to £19 £20 up to £29 £30 up to £39	Up to £9

Follow-up for higher incomes

IF BASIC QUESTION = £700 OR MORE PER WEEK

TOTAL ANNUAL INCOME

Could you please look at the next card and give me (HRP)'s total income as an annual amount from this card?

ENTER BAND SHOW CARD

ANNUAL INCOME

/ 11 11	tor in too in a	
1	£52,000 up to £53,999	26 £165,000 up to £169,999
2	£54,000 up to £55,999	27 £170,000 up to £174,999
3	£56,000 up to £57,999	28 £175,000 up to £179,999
4	£58,000 up to £59,999	29 £180,000 up to £184,999
5	£60,000 up to £64,999	30 £185,000 up to £189,999
6	£65,000 up to £69,999	31 £190,000 up to £194,999
0		
7	£70 000 up to £74 999	32 £195 000 up to £199 999

차별적인 응답구간을 표준안으로 설정하였는데, <표 1-35>의 오른쪽이 고소득자 집단에 대한 소득구간을 제시한 것인데 왼쪽에 비해 상위소득을 자세하게 세분하여 묻고 있다. 고소득자가 많이 조사된 경우에는 700파운드에서 900파운드 사이를 100파운드 간격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며 연간소득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구간은 가구규모와 가구구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표 1-35〉 영국 소득 항목 결과표 표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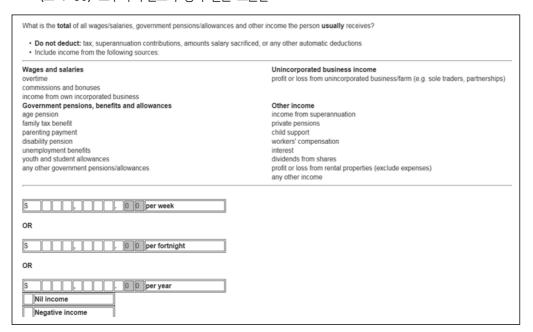
WEEKLY	WEEKLY
Up to £99	Up to £99
£100 and up to £199	£100 and up to £199
£200 and up to £299	£200 and up to £299
£300 and up to £399	£300 and up to £399
£400 and up to £499	£400 and up to £499
£500 and up to £599	£500 and up to £599
£600 and up to £699	£600 and up to £699
£700 and up to £999	£700 and up to £799
	£800 and up to £899
	£900 and up to £999
£1000 and above	£1000 and above
ANNUAL	ANNUAL
Up to £5,199	Up to £5,199
£5,200 and up to £10,399	£5,200 and up to £10,399
£10,400 and up to £15,599	£10,400 and up to £15,599
£15,600 and up to £20,799	£15,600 and up to £20,799
£20,800 and up to £25,999	£20,800 and up to £25,999
£26,000 and up to £31,199	£26,000 and up to £31,199
£31,200 and up to £36,399	£31,200 and up to £36,399

호주는 총소득과 관련해 개인 및 가구소득에 대한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다. 가구소득 질문은 가구 내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소득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개인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개인소득 모듈은 소득의 원천 및 주기에 따라서 상세모듈(the detailed module), 기본모듈(the basic module), 축약모듈(the short module), 단일질문(the single question)이 제안되었다. 상세모듈은 호주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조사 항목으로, 약 300개 이상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복잡하고 질문이 길어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에만 적합하다.

개인소득을 묻는 기본모듈은 대략적으로 39개 질문으로 구성되며 총소득에 대한 개괄적 측정도구이다. 이것은 교차 분류 목적(cross-classificatory purposes)으로 사용가능하다. 이 모듈에서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비정기적 지원 소득은

제외된다. 축약모듈은 3개 고정질문과 1개의 부가질문으로 구성된다. 기본질문을 사용하기에는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한 질문이다. <표 1-36>은 단순성과 간결성 원칙에 따라 1개 항목으로 측정된 소득질문으로 자기기입식 조사용을 예로 든 것이다.

〈표 1-36〉 호주의 주간소득 항목 질문 표준안



호주의 소득 측정 과정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 준거기간 관련해서 연소득보다는 현재소득(current income)을 측정한다. 현재소득은 자료가 수집되는 시점에서 응답자가 받는 소득을 뜻하며,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라는 점에서 선호된다. 이 소득은 서로 다른 보고 주기에 따라 수집될 수 있다.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할 것인지 범주형으로 응답하게 할 것인지(dollar amount vs ranges)도 쟁점인데, 이상적으로 소득은 금액 그 자체로 수집되는 것을 권장한다. 금액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가족이나 가구단위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할 뿐 아니라, 추정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유연성이 있다. 또한, 소득은 +, 0, - 값을 모두 갖는다. 대부분의소득은 0 이상의 값을 가지나, 마이너스 값도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표는 합산의 수준에 따라서 총소득과 가처분소득(disposal income)으로 구분되며, 소득분포에 대한 제공은 분위소득(quantiles)과 균등화 소득(equivalised income)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선호되는 형태는 5분위소득이다.

캐나다는 <표 1-37>과 같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각각에 대해 소득구간을 제시한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후소득을 보정한 소득(adjusted after tax income)에 대해 10분위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보정은 호주나 영국의 가구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균등화된 소득과 같은 의미이다. 한편, 캐나다 역시 마이너스 소득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표 1-37〉 캐나다 소득 항목 분류체계

	가]인소득	가구소득	
	Classification	of total income of person	Classificat	tion of total income of household or family
Class	ification structu	ire	Classification	structure
Code		Range	Code	Range
1		Without income	1	Under \$5,000
2		With income	2	\$5,000 to \$9,999
	2 - With incor	ne	3	\$10,000 to \$14,999
	Code	Range	4	\$15,000 to \$19,999
	2.1	Income loss (negative income)	5	\$20,000 to \$29,999
	2.2	\$1 to \$4,999	6	\$30,000 to \$39,999
	2.3	\$5,000 to \$9,999	7	\$40,000 to \$49,999
	2.4	\$10,000 to \$14,999	8	\$50,000 to \$59,999
	2.5	\$15,000 to \$19,999	9	\$60,000 to \$79,999
	2.6	\$20,000 to \$29,999	10	\$80,000 to \$99,999
	2.7	\$30,000 to \$39,999	11	\$100,000 to \$149,999
	2.8	\$40,000 to \$49,999	12	\$150,000 and over
	2.9	\$50,000 to \$59,999		
	2.10	\$60,000 to \$79,999		
	2.11	\$80,000 to \$99,999		
	2.12	\$100,000 and over		

많은 조사에서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프로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조사원의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험이 풍부하거나 응답자와의 친밀감(rapport) 형성에 능숙한 조사원은 정보를 잘 얻어내는 반면 그렇지 못한 조사원들은 정보를 잘 얻어내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표본오차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프로빙 지침도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선거조사 (ANES 2012 Pre-election Questionnaire)의 경우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고 응답을 거부하였을 경우 다음의 <표 1-38>과 같이 범위를 좁혀가면서 비교적 정확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는 프로빙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표 1-38) 소득 항목 프로빙 질문 예시

다음 질문은 이곳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당신의 20**년 세금 공제 전 총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소득, 연금, 사회보장급여, 배당, 이자 그리고 다른 소득들을 모두 포함해야합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의 20**년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만일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부하였을 경우

\$40,000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 1. \$40,000 or more
- 2. Less than \$40,000

(\$40,000 이하인 경우) \$20,000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 1. \$20,000 or more
- 2. Less than \$20,000

(\$20,000 이하인 경우)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귀하 혹은 귀하의 모든 가족의 20**년 세전 수입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Under \$5,000 2. \$5,000-9,999 3. \$10,000-12,499
- 4. \$12,500-14,999 5. \$15,000-17,499 6. \$17,500-19,999

(\$20,000 이상인 경우)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귀하 혹은 귀하의 모든 가족의 20**년 세전 수입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07. \$20,000-22,499 08. \$22,500-24,999 09. \$25,000-27,499
- 10. \$27,500-29,999 11. \$30,000-34,999 12. \$35,000-39,999

마. 요약 및 제언

소득에 대한 국내 항목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원천 및 주기 등에 따라 그 측정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측정단위(개인소득 vs 가구소득), 소득주기(월소득 vs 연소득), 세전소득 vs 세후소득, 소득원천(근로소득 vs 여타소득) 등이 조사목적에 따라 선택되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은 영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 모두 총소득 개념에 대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측정 방안 및 결과표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마이너스 소득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는 현재의 소득 측정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소득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측정대안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결과표 제공 과정에서 균등화된 소득을 이용한 분위소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은 그 자체로도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소득이 몇 명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가구원 수에 따른 개인당 소득수준을 고려한다거나, 가구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나 기타 친인척들에게 사용되는 이전지출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측정되어야만 소득과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SDGs에서 소득 항목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각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충족 되려면 같은 소득이더라도 응답자의 소득이 몇 명의 가구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다른 수입원과 부담을 나누고 있지 않은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이 가구원수로 조정된 균등화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득을 분위수로 범주화하여 보고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보고방식은 한 국가의 화폐단위나 소득수준의 변화와 상관없이 소득의 분배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승인통계 결과표 제공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경우는 매우 희박한데, 균등화된 분위소득은 국내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6. 혼인상태

가. 개요

혼인상태는 성이나 연령과 같이 응답자의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 법과 문화에 의해 정의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혼인상태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혼인상태 혹은 혼인의 해소가 종교적 혹은 관습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혼인상태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는 성이나 연령에 비해 어려우며, 이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내리는 것 역시 쉽지 않다(UN, 2004b). UN은 혼인에 대해 "법적 배우자 관계를 구성하는 행위, 의식 혹은 과정으로, 결합은 사법적, 종교적 혹은 각 국가가 인정한 다른 방법에 의해 확립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혼인상태에 대해서도 "혼인에 관련하여 개인이 그 국가의 법이나 관습과 관련하여 갖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혼인상태에 관해 최소한 ①미혼(결혼한 적 없음), ②법적으로 결혼(법률혼), ③종교적, 합의, 관습상 결혼(사실혼), ④사별 후 재혼하지 않음, ⑤이혼 후 재혼하지 않음, ⑥결혼하였지만 별거등 6가지로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2008).

전통적인 혼인의 형태가 남녀 간의 법률혼이었다면 최근에는 혼인에 대한 기준이 점차로 불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혼인상태 측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선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를 어떠한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법률혼은 표현 그대로 남녀 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반면 사실혼은 남녀 간의 관계가 가구 구성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의미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각 국가마다 혹은 한 사회에서도 시대

마다 법률혼 혹은 사실혼이 그 사회에서 가지는 법적, 문화적 의미나 효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질문방식

혼인상태 절문은 단순히 혼인상태라는 단어형으로 제시하는 경우에서부터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귀하는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럼, 현재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다(<표 1-39> 참고).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에 따르면 혼인상태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관계없이 15세 이상에 대한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한다. 이 혼인상태는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조사목적에 따라 법률에 따른 전통적인 혼인상태를 가정하여 묻거나, 그 범주도 4개 범주보다 더 적거나 혹은 많게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혼인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비전통적 혼인 (non-traditional marriage) 상태를 측정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 이것을 기혼으로 응답해야 하는지 미혼으로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몇 개의 조사표에서는 이 경우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실제 혼인상태 혹은 사실혼 포함이라는 부가지문을 넣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표 1-39〉 혼인상태 항목 질문방식 분포

	구분	빈도
	- 혼인상태	35
혼인상태	- 혼인종류 - 혼인상태 및 배우자 특성 - 배우자 존재 여부 / 동거여부 배우자 동거여부	4
	 귀하의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법적인 상태와 관계 없이 실제 혼인상태) 	34
혼인여부	- 귀하의 혼인여부는 어떠하십니까?	1
결혼상태	 현재 결혼상태는 무엇입니까? 현재 결혼상태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결혼을 한 상태입니까? 혹시 사별, 별거, 이혼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결혼을 한 적이 없습니까?) 	9

	구분	빈도
결혼여부	- 귀하는 결혼(사실혼 포함)한 적이 있습니까?	6
기타	- 귀하의 혼인(사실혼 포함)과 맞벌이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가지 같이 질문하는 경우	1
합계		90

90건의 혼인상태 질문 응답범주는 기혼과 미혼 혹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2개 범주에서부터 7개 범주까지 매우 다양하였다(<표 1-40> 참고). 이 중 유배우·미혼·사별·이혼의 4개 범주를 적용하고 있는 조사가 가장 많았다. 이 4개 범주는 이혼과 별거를 동시에 문고 있는지, 유배우에 사실혼을 포함하는지에 따른 변이를 보이고 있으나 조사지침에는 이혼에 별거를 포함하는지, 유배우에 사실혼을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일한 분류체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개 범주는 앞에서 언급한 4개 응답범주에서 별거 혹은 동거를 별도의 범주로 제시했는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동거보다는 별거를 별도의 범주로 제시한 경우의 빈도수가 더 많았다. 6개 범주는 동거와 별거 모두를 별도 범주로 제시하였거나 혹은 동거를 유배우에 포함시킨후 기타 범주에 미혼부모를 넣은 경우가 눈에 띈다. 한편, 7개 범주에는 장기부재가 포함되어 있다.

혼인상태 측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용어의 비표준화이다. 미혼, 사별, 이혼, 별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통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기혼의 경우에는 유배우, 기혼, 결혼, 기혼유배우, 배우자있음, 혼인중이라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사실혼과 법적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유배우 범주에 혼인신고 한 경우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눈 경우가 있으나, 이외에 유배우에 사실혼 포함, 동거포함 등을 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사실혼이나 동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동거 및 별거의 경우에는 혼인상태가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지 혹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사는지와 구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응답범주의 순서도 조사마다 매우 차별적이었다. 기혼을 먼저 묻는 경우, 미혼을 먼저 묻는 경우가 차이가 있었으며 사별, 이혼, 별거도 조사에 따라서 순서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혼인상태 측정과정에서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를 혼인상태 항목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성폭력실태조사 및 가정폭력실태조사).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단일질문 하에 혼인상태와 거주형태를 이중으로 질문하고 있어 다른 응답범주와의 상호배타성에 문제가 있었다.

(표 1-40) 혼인상태 항목 질문 응답범주 분포

	구분	빈도
2범주	미혼(및독신) - 기혼	5
	미혼 -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1
	배우자있음 - 배우자없음	1
	미혼 - 배우자있음 - 사별/이혼	4
3범주	미혼 - 기혼(동거포함) - 기타	2
3智干	미혼 - 기혼/동거 - 이혼사별별거	1
	미혼 - 기혼 - 기타(사별이혼동거별거)	1
	미혼 - 유배우 - 사별 - 이혼	36
4범주	미혼 - 유배우(결혼/동거) - 사별 - 이혼/별거	3
4智士	미혼 - 배우자있음(사실혼포함) - 사별 - 이혼	1
	미혼 - 배우자있음(별거포함) - 사별 - 이혼	1
	미혼 - 유배우(결혼/동거)사별 - 이혼 - 별거	8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별거(이혼절차중 별거)	5
	미혼 - 기혼 - 사별 - 이혼 - 기타	2
5범주	미혼 - 혼인신고함 - 혼인신고안암 - 이혼 - 사별	2
	미혼 - 혼인신고함 - 혼인신고안암 - 이혼(별거) - 사별	1
	미혼 - 기혼 - 이혼별거 - 사별 - 동거	1
	결혼한적없음 - 혼인중 - 별거 - 이혼 - 사별 또는 실종	2
	미혼 - 기혼 -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6
6범주	미혼 - 유배우(결혼과 동거포함) - 사별 - 이혼 - 별거 - 기타	2
	미혼 - 유배우 - 사별 - 이혼 - 별거 - 미혼(부)모	2
	미혼 - 유배우 - 사별 - 이혼 - 별거 - 기타(미혼부모)	1
	미혼(미혼모포함) - 유배우 - 사별 - 이혼 - 별거 - 기타	1
7범주	미혼 - 배우자있음 - 이혼 - 사별 - 별거 - 장기부재 - 기타	1
	합계	90

다. 결과표 제공방식

결과표 제목은 대부분 혼인상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으며, 드물게 결혼상태, 혼인 여부, 결혼여부, 배우자 존재여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과표에서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는 두 가지 유형은 미혼-유배우-사별-이혼(15건), 미혼-유배우-사별/이혼(11건)이다.

구분 빈도 미혼(및독신) - 기혼 4 미혼 - 기혼(유배우, 사별, 이혼/별거) 2범주 3 배우자있음 - 배우자없음 미혼 - 배우자있음 - 사별/이혼 4 3범주 미혼 - 기혼(동거포함) - 기타 3 미혼 - 기혼/동거 - 이혼사별별거 미혼 - 유배우 - 사별 - 이혼 15 4범주 미혼 - 유배우(결혼/동거) - 사별 - 이혼/별거 미혼 - 유배우(결혼/동거)사별 - 이혼 - 별거 2 5범주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별거(이혼절차중 별거) 3 미혼 - 기혼 - 사별 - 이혼 - 기타

2

1

46

〈표 1-41〉 혼인상태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분포

라. 해외사례

6범주

영국의 혼인상태 표준 항목은 "Marital or Same-sex Civil Partnership Status"이다. 항목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혼인상태는 동성 간 파트너십 상태를 고려하여 총 9개 범주로 질문하고 있다(<표 1-42>).

〈표 1-42〉 영국의 혼인상태 항목 질문 표준안

미혼 - 기혼 -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미혼 - 유배우 - 사별 - 이혼 - 별거 - 기타(미혼부모)

합계

MARITAL OR SAME-SEX CIVIL PARTNERSHIP STATUS

IF AGE >= 16

Are you ...

ASK OR RECORD

- 1. single, that is, never married and never registered in a same-sex civil partnership
- 2. married
- 3. separated, but still legally married
- 4. divorced
- 5. widowed
- 6. in a registered same-sex civil partnership
- 7. separated, but still legally in a same-sex civil partnership
- 8. formerly in a same-sex civil partnership which is now legally dissolved
- 9. surviving partner from a same-sex civil partnership

Interviewer instruction:

A person whose spouse/same-sex civil partner has been working away from home for over six months, for example on a contract overseas or in the armed forces, should still be coded as married and living with husband/wife or same-sex civil partner if the separation is not permanent.

<표 1-43>의 결과표를 보면 크게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지와 법적으로 파트너십이 없는지로 구분되며 각 범주 안에서 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혹은 동성배우자와의 혼인, 별거로 후자는 미혼, 이혼, 사별로 구별됨을 알 수 있다.

⟨표 1-43⟩ 혼인상태 항목 결과표 표준안

Output ca	tegories: Marital	or same-sex civil partnership sta	tus*
	In a legally registered partnership		
		Married and living with spouse or registered in a same-sex civil partnership and living with same- sex civil partner	XXX
	A.II	Separated	XXX
	All in a legally registered partnership		XXXX
	Not in a legally registered partnership		
		Single (never married or formed a same-sex civil partnership)	XXX
		Divorced or formally registered in a same-sex civil partnership which has now been dissolved	XXX
		Widowed or surviving partner from a same-sex civil partnership	XXX
	All Not in a legally registered partnership	,	XXXX
	All persons		XXXXX

한편, 캐나다에서 혼인상태 변수는 2008년에 부령으로 승인되어 강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혼, 관습법상 혼인(living common law), 사별, 별거, 이혼, 미혼의 6가지 범주로 구별된다. 기혼은 부부가 별거 혹은 이혼을 하지 않은 관계, 관습법상 혼인은 이성 혹은 동성 간에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표 1-44> 참고).

〈표 1-44〉 캐나다 혼인상태 분류체계

This classification was approved as a departmental standard on October 20, 2008.

When the Classification of marital status is used, the exclusion of living common law may be conveyed in a footnote.

1 Married (and not separated)

This category includes persons whose opposite- or same-sex spouse is living, unless the couple is separated or a divorce has been obtained. Also included are persons in civil unions.

2 Living common law

This category includes persons who are living with a person of the opposite sex or of the same sex as a couple but who are not legally married to that person. It includes situations where the members of such a couple are living apart temporarily because of illness, work or school.

3 Widowed (not living common law)

This category includes persons who have lost their legally-married spouse through death and who have not remarried. Those who live with a common-law partner are not included in this category.

4 Separated (not living common law)

This category includes persons currently legally married but who are no longer living with their spouse (for any reason other than illness, work or school) and have not obtained a divorce. Those who live with a common-law partner are not included in this category.

5 Divorced (not living common law)

This category includes persons who have obtained a legal divorce and have not remarried. Those who live with a common-law partner are not included in this category.

6 Single (not living common law)

This category includes persons who have never married (including all persons less than 15 years of age). It also includes persons whose marriage has been legally annulled who were single before the annulled marriage and who have not remarried. Those who live with a common-law partner are not included in this category.

마. 요약 및 제언

국내의 승인통계는 대부분 전통적인 혼인관계를 가정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법률혼과 구분되는 사실혼 관계를 측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실혼에 대한 정의는 아직 미흡하다. 동거를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로 파악하기도 하나 동거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응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거는 현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별거도 마찬가지이다. 응답자 상황에 따라서 별거라는 용어가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것인지 혹은 이혼의 전 단계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실제 연령과 행정자료상의 연령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과 다르게 혼인상태의 경우 실제 혼인상태와 행정자료상의 혼인상태 간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일관적으로 '실제' 혹은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대한 고민과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점유형태

가. 개요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양태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거처라는 공간에 거주하면서 자연적 위협과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취사와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면서, 가족과 이웃과의 유대를 통해 정신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는 인간 생존의 조건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이다(통계개발원, 2016). 이와 관련하여 SDGs에서도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조성'을 목표 11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여 11.1에서는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민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거와 관련하여 거처형태, 점유방식, 주거비용, 주거지 공간구조(방의 수) 등 여러 영역에서 통계가 생산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거처의 형태와 점유방식을 기본항목으로 다루고 있다. 이 중 거처를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는 계층형성 및 생활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SDGs 데이터 세분화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이다. 점유형태는 현재 사는 집을 점유하는 형태로 정의되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자가와 임차의 이분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차 형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된 측정방식이 필요하다.

나 질문방식

133건의 승인통계 중 56건의 조사에서 이 항목을 질문하고 있는데, 점유형태(31건)와 함께 자가구분(14건)이라는 용어가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전문용어이며 이 용어가 질문에서 사용될 경우에도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응답범주를 통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표 1-45〉 점유형태 항목 질문방식 분포

	키워드	
점유형태	- 주거점유형태 -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는?(명의 기준) - 현재 귀댁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점유 형태는 어떠합니까?	31
주거형태	- 귀하의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현재 주거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2
거주형태	- 귀댁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합니까? 부모님 집, 혹은 친지나 아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기타(무상거주)에 해당됩니다.	1
입주형태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입주형태는 무엇입니까?	1
소유형태	-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현재 살고계신 주택의 소유 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은 댁의 소유인가요? 전세 또는 월세인가요	5
자가구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귀댁은 자가입니까? 전·월세입니까? 귀 댁이 살고 있는 주택은 자가입니까? 혹은 전세 또는 월세입니까? 무상에는 정부 혹은 교회로부터의 제공받은 주택, 회사사택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입니까? 또는 세든 집입니까? 	14
기타	- 귀댁이 현재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한 다음 질문에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주거상황 등	2
	합계	56

이와 같은 이유로 점유형태 항목은 질문방식보다 응답범주를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자기집,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 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실소유, 대가지불, 계약종료 시 환급받는 금액의 여부에 따라 범주화된다. 자기집의 경우에는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자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전세는 일정액의 현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세금을 내고 계약기간에 세 들어 사는 경우를, 월세는 매월 집세를 내되 보증금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보증금이 있는 월세와 보증금이 없는 월세로 구분된다. 한편 사글세는 세입자가 1년 또는 10개월 등 일정기간의 집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를, 무상은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지만 임차료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21)

²¹⁾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참조

56건의 승인통계에서 점유형태 항목에 대한 응답범주를 분석해 본 결과 적게는 3개의 응답범주(자기집, 전월세, 무상)로부터 많게는 9개의 응답범주(자기집,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사글세, 무상(가족친지), 무상(친구), 공공임대, 기타)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현재가장 많은 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응답범주 체계는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 월세(사글세 포함), 무상이었다(<표 1-46> 참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집, 전월세, 무상의 응답범주에서 전월세 즉 임대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응답범주가 세분화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전세 및 월세 임대 중에서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 임대형식이 비교적자세하게 구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편이다.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에 대한 구분과 함께 최근에는 보증금있는월세가 반전세, 반월세 등의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세, 일세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으며 무상의 분류체계도 조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6〉 점유형태 항목 응답범주 분포

	구분	빈도
2 HJ Z	, 2	1
3범주	자가 - 전,월세 - 무상(회사, 학교 등에서 제공)	1
4범주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5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거주	3
	자가 - 전세 - 전월세(보증부월세) - 보증금없는월세(사글세)	1
	자가 - 전세 - 월세(사글세, 보증부월세) - 무상및기타	1
5범주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보증금없는월세(사글세) - 무상	16
	자기집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월세 - 무상및기타	5
	자가 - 전세 - 보증금이있는월세 - 보증금이없는월세/(사글세) - 기타(무상거주)	3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보증금없는월세 - 무상	2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연월세 - 보증금없는연월세(사글세) - 무상및기타	1
	자가 - 전세 - 전월세(보증부월세) - 사글세 - 기타 - 무응답	1
6범주	자가 - 전세 - 월세(보증금있음)/(반전세) - 월세(보증금없음) - 사글세 - 무상	7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보증금없는월세 - 무상 - 기타	2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월세(사글세) - 무상 - 기타	1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보증금없는월세 - 사글세 - 기타	1
	자가 - 무상주택 - 사택 - 전세 - 영구임대 - (보증부)월세	1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관사, 사택) - 무상(부모, 형제, 자녀의 실소유) - 기타	1
	자가 - 전세 - 월세(사글세) - 관사 - 하숙 - 기타	1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보증금없는월세 - 사글세또는연세 - 일세 - 무상	1
	자가 - 전세 - 월세(보증금있음) - 월세(보증금없음) - 사글세 - 무상 - 기타	1
기타	자기집 - 전세 - 보증부월세 - 월세 - 사글세 - 무상(가족, 친지) - 무상(친구)	1
/1대		1
	- 공공임대(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 기타	
	합계	56

다. 결과표 제공방식

점유형태를 묻고 있는 56건의 조사 중 KOSIS에서 보고되고 있는 21건의 결과표를 분석해 보았다. 자가와 임차의 2개 범주로 구분한 경우가 1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분류 체계는 자가, 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무상의 5개 범주체계였다.

〈표 1-47〉 점유형태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분포

	구분	빈도
2구분	자가 - 임차등	1
3구분	자가 - 전,월세 - 기타	3
4구분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2 2
5구분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보증금없는월세 - 무상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월세 - 무상및기타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순수월세 - 기타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친척집 - 기숙사 자가 - 전세(민간) - 월세(민간) - 임대(공용) - 기타	5 2 1 1
6구분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월세 - 사글세 - 무상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월세/사글세 - 무상(기족,친지,친구) - 공공임대 - 기타	2
7구분	자가 - 전세 - 보증금있는월세 - 보증금없는월세 - 사글세 - 무상 - 기타	1
	합계	21

라. 해외사례

<표 1-48>은 영국의 점유형태에 관한 질문의 표준안이다. 영국은 부채없이 자가를 소유한 경우(own it outright)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Buying with a mortgage/loan)를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만 소유하는 경우(part own and part rent)와 완전 임차(rent it), 무상(live here rent-free)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불법 무상거주(squatting)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기본적인 질문과함께 추가적으로, 임차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무상일 경우에는 주인이누구이며, 가구 등이 모두 비치되어 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하여 소유 및 임차여부를 <표 1-48>에 제시된 결과표와 같이 재분류하고 있다.

XXXX

XXXXX

〈표 1-48〉 영국 점유형태 항목 질문 및 결과표 표준안

All Rented Privately

All Tenures

ALL HOUSEHOLDS BASIC TENURE QUESTION Do you (or your household) own or rent this accommodation? SHOW CARD 1. Own it outright 2. Buying it with the help of a mortgage/loan 3. Part own and part rent (shared ownership) 4. Rent it (includes all those who are on Housing Benefit or Local Housing Allowance) 5. Live here rent-free (including rent-free in relative's/friend's property but excluding squatters) 6. Squatting **Output Categories: Tenure Owners** Owned outright XXX Buying with a mortgage/loan * XXX All Owners XXXX Social Rented Sector Tenants Rented from council ** XXX Rented from a housing association*** XXX All Social Rented Tenants XXXX All Rented Privately # Rented privately unfurnished## XXX Rented privately furnished XXX

호주의 경우 점유형태는 조사대상이 가구단위인지, 개인단위인지에 따라서 질문에 차이가 있으며 상세질문(detailed question)과 축약질문(short question)으로 나뉜다. 아래 <표 1-49>는 가구단위의 축약질문이다. 축약질문은 총 4개로 구성되는데 해당 거처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지를 묻는다. 만일 부분적으로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담보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추가로 질문한다. 이에 따라서 최종 결과표는 담보대출이 없는 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자가, 임차 그리고 기타 등의 4개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49〉 호주 점유형태 항목 질문 및 결과표 표준안

To be used for face to face interviewer methods (household level). These question modules should be asked of one member spokesperson, who answers on behalf of the household.	of the household, the Household
Q1 Is this dwelling owned or partly owned by [you/ anyone in this household]?	
1. Yes 5. No	1. Go to Q3 5. Go to Q2
Q2 (Is this dwelling) rented by [you/anyone in this household]?	
1. Yes 5. No	1. End of module 5. Go to Q4
Q3 [Do you/does anyone in this household] currently have any mortgages or secured loans on this dwelling?	
1. Yes 5. No	1. Go to Q4 5. Go to Q4
Q4 Is this dwelling being purchased under a shared equity scheme by [you/anyone in this household]? 1. Yes	End of module
1. Tes 5. No 6. Don't know	End of module
Shortened household output categories:	
1 Owner without a mortgage	
2 Owner with a mortgage	
3 Renter	
4 Other (including rent-free, life tenure scheme, shared equity arrangement, other)	

캐나다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가와 임차 2개로 점유형태를 분류하며 자가의 경우 호주와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유무를 추가로 구분하고 있다.

〈표 1-50〉 캐나다 점유형태 분류체계

Classification of status of tenure of household		
1 - Owner		
This category includes households where some member of the household owns their dwelling, even if it is still being paid for.		
2 - Renter		
This category includes households where no member of the household owns their dwelling. The dwelling is considered to be rented even if no cash rent is paid.		

마. 요약 및 제언

국내에서 주거관련 사항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전과 매우 다른 양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차와 관련된 응답범주가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영국, 호주, 캐나다는 자가소유를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그 소유가 담보대출에 의한 것으로 상당수의

'하우스푸어(housepoor)'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유형태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로 주택구입과정에서 대출여부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자가소유 여부에 대한 통계를 생산해내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하겠다.

점유형태는 각 국가마다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가장 기본적인 자가 및 임차여부에 대한 기준은 공통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담보대출 여부를 구분한 점유형태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SDGs 지표 세분화의 기준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8. 장애

가. 개요

장애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SDGs의 포용성 원칙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이다. SDGs 목표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성이나 연령 뿐 아니라 교육(4.5),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5), 불평등 해소(10.2), 도시와 공동체(11.2, 11.7) 등 또한 장애상태에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장애에대한 관심은 많지 않다. 133건의 승인통계 중에서 장애를 묻고 있는 항목은 31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방증해준다. 조사항목의 반영여부는 그 사회의 관심도와 매우 밀접하기때문이다. 현재 장애를 묻고 있는 조사도 복지 부문 조사에 한정되어 이들이 비장애인과비교해 볼 때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질문방식

현재 31건의 조사에서 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장애 여부를 직접 묻는 경우는 13건, 장애유형(4건) 및 장애여부+장애등급(2건)을 통해서 장애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6건이었다. 이와 함께 장애여부와 유형을 동시에 묻는 경우는 4건, 장애유형과 등급을 동시에 묻는 경우는 7건, 그리고 세 가지를 모두 묻는 경우는 1건이었다(<표 1-51> 참고). 그런데 장애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 항목들이 대부분 행정적인 등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애여부가 포함된 20건 조사중 등록이나 복지카드 여부를 묻는 경우는 9건이었으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또한 행정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여부를 파악하는 조사가 대부분 장애인들의 현재 현황 및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장애항목의 질문방식은 <표 1-51>과 같다. 장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의 상당수가 장애여부에 대해서 예, 아니오의 이분형 응답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유형 및 등급의 경우, 행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표준화 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장애와 관련된 법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평가를 1~6등급으로, 국민연금은 1~4등급으로, 산재보험은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등급 간 비교가 쉽지 않다. 반면에 조사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22)을 응답범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15개를 모두 응답 범주로 제시한 경우(9건)와 이 중 일부 유형만을 축약하여 제시하는 경우(4건)로 구분된다. 한편, 자살실태조사 및 정신질환실태조사, 인구총조사에서는 장애유형에 대한 다른 구분을 적용하고 있다.

〈표 1-51〉 장애 항목 질문방식 분포

구분	예시	빈도
장애여부	예 - 아니오, 있음 - 없음	13
2년에서 비그	6개 유형	1
장애여부+ 장애유형	9개 유형	1
0 -11 11 -0	15개 유형	2
	1~3급 장애인, 4~6급 장애인, 비등록장애인	1
장애등급	장애없음 - 등록1급 - 등록2급 - 등록3급 - 비등록장애인 - 등급 모름	1
장애유형	15개 유형	1
्य भाम ख	별도유형	3
기세 () 원 :	5개 유형	1
장애유형+ 등급	7개 유형 6등급	1
OH	15개 유형 6등급 4개 / 15개 유형 주관식등급 1개	5
장애여부+ 유형+등급	15개 유형+6등급	1
	합계	31

다. 결과표 제공방식

장애에 대한 31건 조사 중 12건 조사만이 공식적인 결과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52>는 결과표 제시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애여부로 구별하고 있는 경우는 7건, 장애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 경우는 2건이었다.

²²⁾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상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표 1-52〉 장애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분포

구분	예시	빈도
장애(인)여부별	있음 없음 장애 비장애	7
장애유형별		2
ㅈㅂ	등록여부별 (예 vs 아니오) 장애유형별	1
84	장애정도별 (중증 vs 경증) 장애유형별	2

라. 해외사례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모두 장애와 관련된 일관된 항목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호주의 경우, 장애의 심각성(severity of disability)과 도움이 필요한 핵심활동(core activity need for assistance)이라는 항목으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두 항목은 센서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항목과 유사하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자기보고식의 건강상태(health problem)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장애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질문 형태로 장애지위를 구분하고 있다(<표 1-53> 참조). 영국은 장기적 건강상태 및 질병 (long-lasting health conditions and illness)이라는 항목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항목 표준 안을 제시하고 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여부를 질문하고 있으며 결과표에서는 질병유무를 무응답 및 응답거절과 함께 표준안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1-53〉 영국 장애 항목 질문 표준안

HARMONISED QUESTION

ASK IN PERSON IF AGE >=16 ASK BY PROXY IF AGE <16 OR NOT FIT TO RESPOND IN PERSON

Do you have any physical or mental health conditions or illnesses lasting or expected to last for 12 months or more?

- 1. Yes;
- 2. No.

Spontaneous only:

- 3. Don't know
- 4. Refusal

마. 요약 및 제언

장애 항목에 대한 국제기준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 장애 항목 관련 질문방식, 응답범주, 결과표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는 장애 유형이나 등급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를 준용해서 조사표가 개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류기준을 조사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작적인 정의 없이 법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응답자의 이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여부를 묻는 조사가 전체 승인통계 중 얼마 되지 않고, 그 마저도 장애여부에 장애인 대상 조사 등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적 태도, 행동, 인식 등을 비장애인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장애여부 및 장애 상황에 대한 항목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9. 이민지위

가. 개요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국제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도 그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한국 내 이민자들은 현재 200만명을 넘고 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 속에 대한민국 내의 이민자들은 내국인들과 섞여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만의 고유문화나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거주지역이나 직업 등에서 정주민들과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민자 중 많은 수가 단순 기술직이나 서비스 업종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이민지위는 사회계층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민에 대한 질문이 단순히 삶의 경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문의 중요성은 한국사회보다 먼저 이민자를 수용했던 다른 국가들에서 이민자와 내국인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분화되는 현상, 그리고 집단들 사이의 갈등 경험에 비추어볼 때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 · 민족 간 갈등, 사회경제적 계층 분화현상, 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권리 침해 문제 등으로 SDGs에서는 응답자의 이민배경 뿐 아니라 인종 및 민족과 국가 등에 따른 세분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오랜 시간 실질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이민은 인종과 민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는 이민자가 아니면서도 아시아인 혹은 아프리카인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동남 아시아인인 경우 대부분 이민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족에 대한 구분 역시 재중동포 (조선족)를 제외하고는 이민배경과 민족적 특성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 간에도 국제이동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민이라는 현상 자체가 각 사회의 문화적 혹은 제도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측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항목에서 공통성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OECD나 EU 등 국제이민에 관한 통계를 생산해 내는 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개념은 국적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외국인(foreign population people)과 외국인의 개념을 확장하여 귀화한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해외출생인구(foreign born population)이다. 이에 따르면 국적 및 출생지가 이민지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이민 2세대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문제가제기되면서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를 이민지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를 이민배경인구(the population with a migration background)로 규정하고 있다(정기선·김혜진, 2015).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다문화가족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 혹은 귀화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의미하는데, 2008년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조사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항목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귀화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이민배경인구와 맥이 닿아있다고할 수 있다. 사실, 다문화가족은 명백히 이민지위를 측정하는 항목은 아니나,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 가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권고되고 있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소외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질문방식

<표 1-54>를 보면, 이민지위를 묻고 있는 28건의 승인통계 중 국적을 묻는 경우는 13건, 출생국가를 묻는 경우는 4건이었다. 출생국가를 묻는 조사의 대부분은 건강상태 및 건강행동과 관련된 조사이다. 그러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등의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이중 어느 하나를 질문해서는 이민지위를 구별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속인주의를택하고 있는 한국의 국적자가 해외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출신국가가 외국이면이 자녀는실제로는 이민배경이 있지만이를 측정할수 없다. 반대로 속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국적법으로 인해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의 국적에 따라 계속해서 외국인의 신분으로살아가는 경우이민을 했다고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민여부 및 출신국가 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국적 및 출생국가를 모두 묻는 경우는 3건에 불과하였다.

〈표 1-54〉이민지위 항목 구성

구분	빈도
국적	13
출생국가	4
다문화	6
국적+출생국가	3
국적+다문화	2
합계	28

(표 1-55) 이민지위 항목 질문방식 분포

	구분
	귀하가 태어난 곳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귀하의 출생국가는 어디입니까?
출생국	귀하와 배우자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출신 국가를 적어주세요.
	아버지/어머니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7.71	출생 시 국적과 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국적	모국이 다른 나라(외국)입니까?
	다문화가족/다문화가구
다문화	귀하는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민자입니까?
	아동의 현재 부모는 결혼 이민자(다문화)입니까?
	학생은 외국인주민 자녀입니까?
	'이 학생'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다문화가족 항목의 경우 현재 측정의 세밀도가 높지 않다. 다문화가족 여부를 응답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이외에 새터민 등도 포함한다거나, 가족, 가정, 가구 등 일관적이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아직까지 이민에 관련된 역사가 짧고, 다양한 유형이 확보되지 않아서 측정 방안에 대한 개발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이민자 중 많은 수는 결혼을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이며, 이들의 자녀 역시 중도 입국을 통해 이민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 출생하였다 하더 라도, 부모 중 어느 한쪽 혹은 양쪽 부모 모두 이민지위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한국 사회의 적응 방식이 원주민 가정의 청소년과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민배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자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 관련 논의에서 '이민배경 청소년' 혹은 '이민배경 아동'이라고 할 때,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민 온 아동과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보건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실태조사'에서 부모의 이민지위를 통한 아동의 이민배경을 다음의 <표 1-56>과 같이 묻고 있다. 아직까지 이민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이민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질문에 응답하는 경우가 적으나, 점차로 이민배경을 갖고 있는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항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6〉이민지위 항목 측정 예시

아동의 현재 부모는 결혼 이민자(다문화)입니까?

1) 결혼이민자 2) 한국인

8)비해당 (부재)

아동의 부모가 이민자인 경우 어디 출신입니까?

1) 중국 (조선족, 한족) 2) 베트남

3) 일본

4) 필리핀 7)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가 5) 몽골 8) 기타 6) 캄보디아 88) 비해당

이민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이민여부를 묻는 질문과 함께 이민자의 출생국적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 개방형 질문을 할 수도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내 이주민의 주요 출신국 들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표 1-57> 참고).

〈표 1-57〉이민지위 항목 응답범주 분포

구분	빈도
이분형 (예 아니오, 있음 없음)	11
이분형 + 객관식	2
이분형 + 주관식	5
객관식	12
주관식	3
합계	33

주: 이민지위를 두 가지(국적+출생국가, 국적+다문화)로 질문한 경우 각각의 응답범주 유형을 집계함

이때 응답범주는 이민자가 많은 국가로부터 적은 국가 순으로 제시되는데, 해당 조사의 주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응답범주의 종류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질문의 응답 범주를 제시 하는 경향이 있다.

(표 1-58) 이민지위 항목 측정 예시 1

 1) 중국 (조선족, 한족)
 2) 베트남
 3) 일본

 4) 필리핀
 5) 몽골
 6) 캄보디아

 7) 우즈베키스탄 등 주변국
 8) 기타
 88) 비해당

특이한 점은 전국단위 조사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몇 가지 조사에서 <표 1-59>와 같이 표준화되어 사용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예: 김천시 농업조사, 인제군 농림어업조사 등). 이는 아마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많으며, 이들이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에 큰 고려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응답범주는 현재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조사는 이민 배경이 있는 경우 입국연도도 묻고 있다.

(표 1-59) 이민지위 항목 측정 예시 2

1) 대한민국	2) 베트남	3) 중국(한족 등)
4) 중국(조선족)	5) 필리핀	6) 태국
7) 인도네시아	8) 스리랑카	9) 우즈베키스탄
10) 일본	11) 몽골	12) 캄보디아
13) 미국	14) 네팔	15) 방글라데시
16) 파키스탄	17) 러시아	18) 대만
19) 미얀마	20) 캐나다	21) 이외의 국가

다. 결과표 제공방식

결과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었다(<표 1-60> 참고). 크게 국적, 민족, 문화권 등출신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이민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나뉜다. 범주 순서는 주로 빈도수에 따라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 등이 대부분의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국적을 제시하는 방법은한국과 외국을 구분하는 경우, 대륙별로 구분하는 경우, 아시아 중심 국가별로 구분하는 경우, 전 세계 국가를 병렬로 제시하는 경우이다.

(표 1-60) 이민지위 항목 결과표 제공방식 분포: 국적

 구분		국적	(민족 및 출	신지역 포	드함)	
한국과	한국(출생)		한국(귀화 등	<u>-</u>)		외국
외국 구분	외국인부모		외국인 - 한국	구인부모	한국인부	-모
대륙별	일본권 동남아시아권	중국권	중 북미권	화권 <i>7</i>	기타	
대륙 & 아시아 중심 국가별	아시아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북미 유럽 기타	우즈베키: 인도네시(아 대국 기타 아시아 오세아니아	,		
,,,,	중국 일본 베트남 그 외 동남아시아 몽골/러시아/중앙 기타					
아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우즈베키스틴		필리핀	기타 나라
중심 국가별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한족 등 기타	-	일본	중국(조선족)
전 세계 국가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네팔 러시아 캐나다	중국(한족 대국 대만 이외 국기	우즈베키스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u>}</u>	미국	

라. 해외사례

해외에서도 이민지위를 측정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덜 되어 있었다. 영국에서 가장 유사한 항목은 인종그룹(ethnic group)이다. 이 항목은 출생국가, 국적, 언어

(language spoken at home), 피부색, 출신지역(national/geographical origin), 종교 등과 같은 복합적인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4개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즉 국적을 묻는 질문에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단위 뿐 아니라 각 국가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호주는 본인 및 부모 출생국가, 호주시민권, 입국연도 항목을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출생국가 항목의 경우, 상세질문모듈, 축약질문모듈, 최소질문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질문의 세분화 수준을 보면, 가장 상세한 질문에서는 출생국가를 폐쇄형으로 국가별로 응답하도록 하는 반면에 축약모듈에서는 호주와 기타의 이분형으로 묻되 기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소질문모듈에서는 호주와 호주 이외의 이분형으로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표 1-61> 참고).

〈표 1-61〉 호주 본인출생국가 항목 질문 표준안

etailed question mo		
he detailed question r	module for the variable Country of Birth of Person is:	
). In which country [were you] [was the person] [was (name)] born?	
Australia		
England		
New Zealand		
India		
Italy		
Vietnam		
Philippines		
South Africa		
Scotland		
Malaysia		
Other - Please sp	pecify	
Short question mod	lule	
The short question m	odule for the variable Country of Birth of Person is:	
Q. In which country	[were you] [was the person] [was (name)] born?	
Australia 🗖		
Other - please sp	ecify	
Minimum question	module	
The minimum quest	tion module for the variable Country of Birth of Person is:	
O In which countr	y [were you] [was the person] [was (name)] born?	
Q. III WINCH COUNT		
Australia		

캐나다 통계청은 이민자와 비이민자, 그리고 영주권이 없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이민자, 이민자, 비영주자의 3개 범주로 분류되는데, 비이민자는 출생 시부터 캐나다 국적을 소유한 사람을, 이민자는 이민/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비영주자는 다른 국가로부터 근로 또는 학업, 난민의 지위 인정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을 뜻한다(<표 1-62> 참고).

〈표 1-62〉 캐나다 이민지위 분류체계

	Classification of immigrant status
Classificatio Display definitions	n structure
Code	Category
1	Non-immigrant
2	Immigrant
3	Non-permanent resident
1 - Non-immig	rant
This refers to a per	rson who is a Canadian citizen by birth.
2 - Immigrant	
permanently by im- immigrants are Car	rson who is or has ever been a landed immigrant/permanent resident. This person has been granted the right to live in Canada migration authorities. Some immigrants have resided in Canada for a number of years, while others have arrived recently. Some nadian citizens, while others are not. Most immigrants are born outside Canada, but a small number are born in Canada. In the 2011 d Survey, 'Immigrants' includes immigrants who landed in Canada prior to May 10, 2011.
3 - Non-perma	nent resident
This refers to a per in Canada with the	rson from another country who has a work or study permit or who is a refugee claimant, and any non-Canadian-born family member living m.

캐나다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민지위와 연관된 항목으로 세대지위(generation status)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1세대는 캐나다가 아닌 곳에서 출생한 경우로 여기에는 대부분 이민자가 포함된다. 2세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나 부모 중 한 명이 최소한 캐나다인으로, 이민자 자녀가 여기에 해당하며, 3세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며, 부모 모두 캐나다인인 경우이다. 이는 캐나다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아닌 이민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로 최근에 이민자의 범위를 2세대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마. 요약 및 제언

현재 국내승인통계에서 이민에 대한 질문은 이민정책 및 복지정책과 관련한 조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그 동안 단일민족국가 체제를 오랫동안 고수해왔고, 본격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이 대량으로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자의 유입은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민 2세들의 성장을 통해 한국의

민족 및 인종구성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응답자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다양한 인종, 민족, 이민지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으나,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혹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의 시작점으로서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 환기와 더불어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질문지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지위, 즉 자신 혹은 부모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항목 뿐 아니라, 출신국, 출생당시 국적, 현재국적, 인종, 민족 등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질문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지위에 관한 질문이 가구 차원에 적용되는 경우 응답자 개인의 이민배경보다는 이민자가 해당 가구에 살고 있는가 여부를 묻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는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민자에 대한 이해와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혹은 지역사회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민지위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제6절 결론

SDGs 이행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 동시에 각 지역 및 국가별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개념 및 측정방안 공유를 전제로 한다. 특히 모든 지표가 주요 특성별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 권고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주요 변수의 분류체계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승인통계의 핵심항목들에 대한 질문 및 결과표 표준화 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1. 결과요약 및 주요 이슈

성, 연령, 교육정도, 소득, 혼인상태, 점유형태, 장애, 이민지위의 8개 핵심항목에 대한 국내승인통계 표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성 및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표준화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연령 항목은 국제적으로도 표준화가 높은 수준이었는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의 경우에는 실제 세는 나이와 만 연령과 같은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몇 가지 측정쟁점이 존재하였다. 결과표 제공과정 에서도 10세 간격분류 방법이 국내적으로는 일치 수준이 높았으나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정도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방법에 대해서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대학과 대학교 구분이 불분명하고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은 향후 표준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질문 및 결과표 제공방식에서 표준화 정도가 낮은 편이었다. 조사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소득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으며, 응답범주 구성에서도 최소값, 최대값, 구간간격 등이 매우 차별적이어서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제 비교를 위해 균등화된 소득에 의한 분위소득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인상태 및 점유형태 항목은 측정형태가 더욱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동거나 별거 등의 다양한 혼인유형이 나타나고, 점유형태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임차방식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응답범주 측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장애와 이민지위의 경우에는 표준화와 관련 다른 양상이 제기되었다. 두 항목은 각각 장애인 혹은 이민자의 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 조사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련법에 근거한 조사항목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장애의 경우 장애유형이나 등급은 법에서 정한 유형을 조사표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 유형 간 비교가능성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일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부처별로 개념 규정에서 차이를 보여 오히려 표준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 표준화 방안 도입을 위해서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호주, 캐나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각국의 통계청 혹은 지역 내 국가 간 공동 조사연구를 통해 표준지침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각 항목의 질문 방식, 응답범주, 보고체계 등에 대해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각 조사 시행 주체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신경써야 할 대목은 특정 항목에 대해서 단일한 표준 양식이 아닌 조사별 시공간 제약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질문 표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결과표 제공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분류기준을 반영한 결과표 양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사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SDGs와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항목누락으로 인해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 연령, 교육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승인통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SDGs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장애, 이민지위 등은 상당히 적은 수의 조사에서만 해당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이 조사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회조사가 아니라 특정 집단, 즉 장애인 집단 혹은 이민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상 집단의 특성이 일반집단과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장애 및 이민지위 등에 대해 추가 설문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리적 분포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세분화 지표로서 응답자의 지리적 위치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승인통계는 자료처리를 위한 정보 이외에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의의 및 한계

이 연구는 SDGs 데이터 세분화와 관련한 조사 항목이 국내승인통계에서 얼마나 표준화되어 질문되고 보고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첫 번째 연구이다. SDGs 데이터 세분화 이전에도 항목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있어왔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지만, SDGs 세분화의 기초가 되는 항목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위해 국가통계작성기관의 향후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로 항목 표준화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별 항목의 특수성을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사례와 국내승인통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발견하였으나, 개선안 제언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승인통계 검토 과정에서는 조사표와 KOSIS 결과표 이외에 해당 조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조사표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지침 등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조사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좀 더 풍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성, 연령, 소득, 교육정도, 혼인상태, 점유형태, 장애, 이민지위 각각의 항목은 독립적인 연구주제가 될 만큼 다양한이슈들을 담고 있다. 이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측정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해내기 위해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주제 전문가와 조사방법론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에 향후에는 각 항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순차적으로 연구를 진행, 표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항목 표준화가 기관 및 조사의 차별성을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항목 표준화는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의 특성에 따라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된 표준 모델들을 제공하되, 이 모델들 간에는 최소한도로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이 관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조사일지라도 동일 항목에 대해서 표준 질문을 사용한다면, 비교가능성이 증가하여 사회 전반적인 현황을 통찰력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조사의 개발보다는 연계기법을 활용하여 2차, 3차 자료를 생산해 내면, 유사 내용에 대한 반복조사의 감소로

비용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주제를 통합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연관조사 및 행정자료 결과물 간 비교를 통해 품질 평가도 가능하며, 표준화된 지식체계의 공유로 새로운 조사의 개발과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오랫동안 센서스 및 인구, 사회 통계를 담당해온 Priest(2010)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표현을 통계에 적용하여 '나이 든 통계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count). 자료통합, 표준화, 마이닝에 실패한고지식한 통계기관의 데이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count).'고 말하였다.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성이 낮은 데이터의 생명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참고문헌

권순필(2007), 「고용통계의 소지역별 추정 방법」,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권세혁(2009), 『소지역 추정방법을 이용한 실업자 수 추정 사례 연구』, 조사연구, 10(1): 141-154. 김경미(2009), 「집계표 데이터의 정보노출 제한방안-광업, 제조업조사를 대상으로」,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김규성(2000), 『무응답 대체방법과 대체효과』, 조사연구 1(2):1~14.

남상민·이희길·노형준(2016), 『2016 지역사회지표 작성매뉴얼』,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박민정(2015), 「마이크로데이터 매스킹 기법 실무 활용 안내서」,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박영실·양경진(2015), 「조사품질 개선을 위한 질문관리 및 표준화 방안」,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이의규, "국가통계실무 3: 자료수집 처리 및 분석』, 통계교육원.

정기선·김혜진(2015), 「이주민통계 국제비교 현황과 시사점」, IOM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시리즈 2015-01(1-51), IOM 이민정책연구원.

정동명(2006), 「마이크로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비밀보호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정동욱·김경미(2008), 「매크로데이터의 비밀보호방법에 대한 고찰」,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2016), 「주거영역 통계프레임워크 작성」,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Eurostat(2007), "Task FOrce on Core Social Variables Eurostat."

- Fasel, Nicolas(2016), "To disaggregate or not to disaggregate", Expert Group Meeting on Data Disaggregation (뉴욕, 2016. 6.27-29 ESA/STAT.AC.320/1).
- Fuertes, Iluminada(2008), "Towards Harmonization or Standardization in Governmental Accounting?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Experienc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10(4): 327-345.
- Hancioglu, Attila(2016), "Leaving no one behind : from a statistical perspective" Expert Group Meeting on Data Disaggregation (中央, 2016. 6.27-29 ESA/STAT.AC.320/1).
- Lindquist, John. N. and Janice M. Duck(1982), "The Elderly victim at Risk: Explaining the fear -Victimization Paradox" Criminology 20(1): 115-126.
- Marpsat, Maryse and Nicolas Razafindratsima(2010), "Survey methods for hard to reach populations: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Methodological Innovations Online 5(2) 3-16.
- ONS(2016), "A-Z Quick Reference Guide to Harmonised Concepts and Questions for Government Social Surveys".
 -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60105160709/http://www.ons.gov.uk/ons/guide-method/harmonisation/harmonisation-programme/a-z-of-harmonised-principles.pdf (2016.11.10. 접속).
- Peter, Granda and Emily Blasczyk(2016), "Data Harmonization: Guidelines for Best Practice in Cross-Cultural Surveys", Ann Arbor, MI: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http://www.ccsg.isr.umich.edu/(2016.9.13.접속).
- Priest, Gordon(2010), "The Struggle for Integration and Harmonization of Social Statistics in a Statistical Agency": A Case Study of Statistics Canada. IHSN Working Paper No 004.

- Richen, Albercht and Ansgar Steinhorst(2005), "Standardization or Harmonization? You Need Both." Business Process Trends (November).
- Sachs, Jeffrey D.(2015),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Co.
- SDSN(2015), "Data for Development": A Needs Assessment for SDG Monitoring and Statistical Capacity Development.
- Statistics Canada(2004), "Policy on Standards". statistics Canada.
- Tourangeau, Roger(2014), "Defining hard-to-survey populations" In Roger Tourangeau, Brad Edwards, Timothy P.Johnson, Kirk M. Wolter, and Nancy Bates (eds), Hard-to-Survey-Populations (pp.3-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ted Nations(1982), "Provisional Guidelines on Standard International Age Classifications".
-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6/2/Rev.1).
-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2017),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7/2).
-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2015), "Expert Group Meeting on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Post-2015 Developmet Agenda".
- United Nations(2004a), "Demographic Yearbook review: National reporting of age and sex-specific data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United Nations(2004b), "Demographic Yearbook review: National reporting of data on marriage and divorc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 United Nations(2008),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2.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7/Rev.2. Sales No. E.07.XVII.8
- UNESCAP(2016), "Concept note sex disaggregated data for the SDG indicators in Asia Pacific workshop"(2016.5.25.~27, 태국).
- Victora Cesar G.(2016), "Data Needs for Analysis of Inequalities: what we learned from the countdown to 2015", Expert Group Meeting on Data Disaggregation(77 4, 2016. 6.27-29 ESA/STAT.AC.320/1)
- Willis Gordon B., Tom W. Smith, Salma Shariff-Marco, and Ned English(2014), "Overview of the Special Issue on Surveying the Hard-to-Reach",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30(2) pp.171-176.